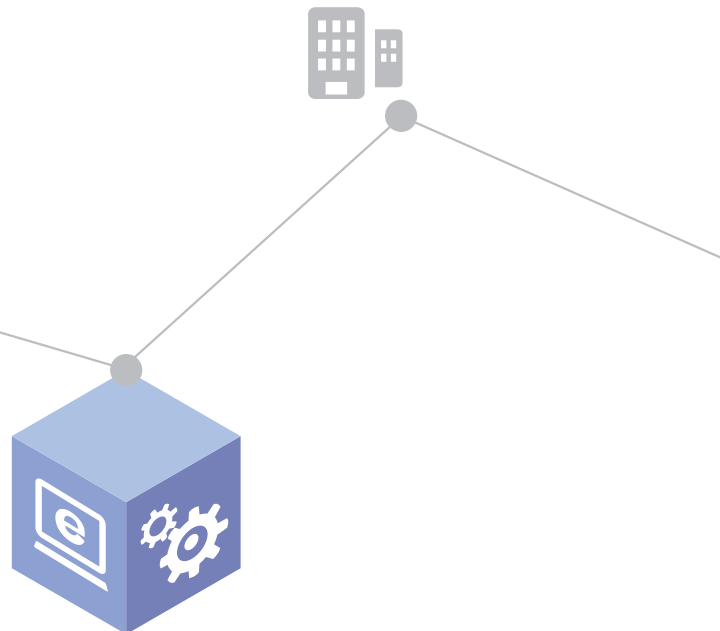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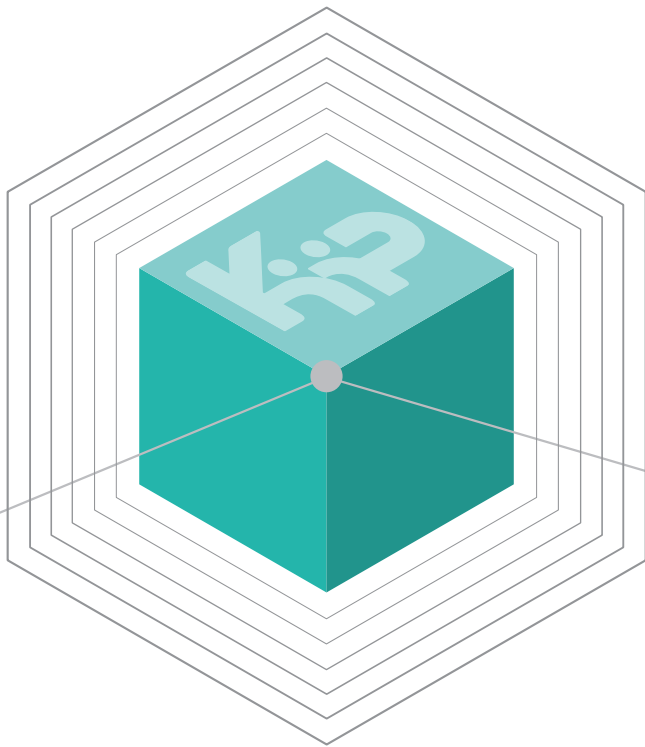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715-01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타당성분석 및 운영방안 연구



제 출 문

한국발명진흥회 귀하

본 보고서를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 및 운영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주관연구기관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참여연구원

- 연구책임자: 하홍준(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참여연구원: 곽 현(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문위원)

목 차

| | |
|--|-----------|
| 요약문 | 1 |
| 제 1장. 서 론 | 27 |
| 제 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9 |
| 제 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 32 |
| 제 2장. 지식재산과 도시 | 35 |
| 제 1절 지식재산의 중요성 | 37 |
| 제 2절 도시경쟁력과 도시단위사업의 필요성 | 40 |
| 제 3절 지식재산도시의 필요성 및 개념 | 44 |
| 제 3장. 해외 지역지식재산정책 및 도시지정사업 사례 ... | 47 |
| 제 1절 중국 | 49 |
| 제 2절 일본 | 60 |
| 제 4장. 국내 지역지식재산정책 및 도시지정사업 사례 ... | 67 |
| 제 1절 국내 지역지식재산 지원정책 | 69 |
| 제 2절 (舊)지식재산도시 지정사업 분석 | 73 |
| 제 3절 도시지정 특화사업 사례 | 82 |
| 제 4절 시사점 및 지식재산도시사업의 방향성 | 93 |
| 제 5장. 지식재산도시 지정사업 | 97 |
| 제 1절 사업의 법적·정책적 근거 | 99 |
| 제 2절 지식재산도시 지정사업 기본구성 | 101 |
| 제 3절 지식재산도시 사업 추진체계 | 102 |
| 제 4절 지식재산도시 사업 예산 | 105 |
| 제 5절 추진절차 | 107 |

목 차

| | |
|--|------------|
| 제 6장. 지식재산도시 지정 | 109 |
| 제 1절 지식재산도시 지정 | 111 |
| 제 2절 사업추진단계 | 115 |
| 제 3절 추진 단계별 주요내용 | 116 |
| | |
| 제 7장. 지식재산도시 추진 활성화 전략 및 지원 | 123 |
| 제 1절 실행력 제고 방안 | 125 |
| 제 2절 활성화 지원 방안 | 130 |
| 제 3절 가치효용 극대화 방안 | 141 |

표 목차

| | |
|---|-----|
| 〈표 1〉 중국 지식재산 시점·시범도시 추진경과 | 52 |
| 〈표 2〉 중국 지식재산 시점·시범도시 신청 기본요건 | 53 |
| 〈표 3〉 중국정부의 지식재산 시점·시범도시 요구사항 | 56 |
| 〈표 4〉 일본 지역중소기업 지적재산지원 강화사업(대표사례) | 62 |
| 〈표 5〉 일본 지재선진도시 지원내용(일부도시 예시) | 64 |
| 〈표 6〉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주요 사업 | 70 |
| 〈표 7〉 지식재산의 지역간 불균형 | 71 |
| 〈표 8〉 지식재산역량 상위 5개 도시 (연도별) | 71 |
| 〈표 9〉 지자체內 지식재산관련 업무 담당자 수 | 72 |
| 〈표 10〉 舊지식재산도시 추진경과 | 73 |
| 〈표 11〉 舊지식재산도시 평가지표(추진체계) | 77 |
| 〈표 12〉 舊지식재산도시 평가지표(운영사업) | 77 |
| 〈표 13〉 舊지식재산도시 평가지표(지식재산현황) | 78 |
| 〈표 14〉 문화도시 지정유형 | 83 |
| 〈표 15〉 문화도시 지정심의 기준 | 85 |
| 〈표 16〉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연도별) | 88 |
| 〈표 17〉 평생학습도시 신청자격 | 89 |
| 〈표 18〉 평생학습도시 주요 심사 기준 | 89 |
| 〈표 19〉 평생학습도시 지원규모 | 90 |
| 〈표 20〉 사업 추진 주체의 기능 및 역할 | 104 |
| 〈표 21〉 연도별 예산 추이(예상)(국비) | 105 |
| 〈표 22〉 지식재산도시 지정 유형 | 111 |
| 〈표 23〉 지식재산도시조성계획 수립 주요내용(예시) | 116 |
| 〈표 24〉 지식재산도시 추진 활성화 지원방안(예시) | 130 |
| 〈표 25〉 지역 이전/신설 IP 서비스 업체 주요 지원 사항(안) | 133 |
| 〈표 26〉 기업군에 대한 IP 서비스 제공 방안(예시) | 135 |
| 〈표 27〉 부처연계 및 복합화 가능 주요 사업의 내용(예시) | 142 |

그림 목차

| | |
|---|-----|
| 〈그림 1〉 연구의 구성 | 33 |
| 〈그림 2〉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현황 | 70 |
| 〈그림 3〉 舊지식재산도시 지원절차 | 75 |
| 〈그림 4〉 舊지식재산도시 평가지표 | 76 |
| 〈그림 5〉 舊지식재산도시 추진체계 | 80 |
| 〈그림 6〉 문화도시 지정절차 | 84 |
| 〈그림 7〉 문화도시 지원내용 | 86 |
| 〈그림 8〉 평생학습도시 지원절차 | 90 |
| 〈그림 9〉 평생학습도시 추진체계 | 91 |
| 〈그림 10〉 지식재산도시 추진체계 | 102 |
| 〈그림 11〉 지식재산도시사업 추진절차 | 107 |
| 〈그림 12〉 지식재산도시 지정 평가 지표 도출을 위한 계층구조 | 119 |
| 〈그림 13〉 지식재산도시 전문가 통합운영제도의 전문가 역할 | 128 |
| 〈그림 14〉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시도별 주요 산업테마 | 134 |
| 〈그림 15〉 독일 도시 네트워크 구축사례 | 143 |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4차 산업혁명, 미·중 무역 분쟁 등 글로벌 환경 변화로 지식재산이 시장 지배력과 글로벌 가치사슬 장악을 위한 화두로 부각
 - 세계경제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지식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국가에서 혁신이 생겨나고 부(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World Economic Forum, '16.1)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승자가 되는 4가지 조건 중 하나로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꼽음
 - 지식재산 등의 무형자산이 노동·자본 등 유형자산을 추월하여 기업가치를 결정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요인으로 자리매김
 - * S&P 500 기업의 가치변화 : ('75) 무형자산 17%, 유형자산 83% → ('15) 무형자산 87%, 유형자산 13%('17, OCEANTOMO社)
-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이를 통한 지역단위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임
 - 지역의 발전은 R&D, IP 전문 인력, IP 서비스 기관 등 IP 혁신 인프라가 얼마나 해당 지역에 집적되어 있느냐가 중요요인임
 - 그러나 IP 서비스기관 및 인력의 대다수가 서울 및 대전 지역에 집중되는 등 지역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함

요약문

〈표 요약 1〉 지식재산의 지역간 불균형

| 구분 | 서울 | 대전 | 경기 | 강원 | 전남 | 부산 |
|----------------------|-------|--------|-------|-------|-------|-------|
| 인구 만 명당 최근 3년 등록특허 수 | 89.10 | 141.49 | 62.19 | 23.68 | 19.56 | 24.00 |
| 특허품질(A등급 비중) | 17.5% | 17.7% | 15.4% | 11.8% | 3.8% | 6.0% |
| 특허 100건당 서비스업 종사자 수 | 26.14 | 2.65 | 1.68 | 2.67 | 2.43 | 3.29 |
| 유효특허 100건당 변리사 수 | 2.88 | 0.54 | 0.30 | 0.40 | 0.32 | 1.16 |
| 최근 5년간 특허등록 기업비중 | 1.22% | 1.36% | 1.61% | 0.59% | 0.76% | 0.61% |

※ 출처: 2017년 지역별 지식재산 역량진단(20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도시특화 발전모델의 하나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지식재산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지식재산도시 지정 사업은 지역별 특성 및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별 IP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지식재산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의 지식재산 시책을 활성화하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

제 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 '지식재산도시 지정사업'의 기본틀을 구상하고 이에 따른 운영방안과 활성화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 지식재산도시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
- (주요 내용 1) 국내·외 지식재산도시 관련 사례
 - 국외 지식재산도시 사례, 국내 특화도시사업 사례, (舊)지식재산도시 실패요인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추후 사업의 방향성 설정

□ (주요 내용 2) 지식재산도시 지정 사업 및 지정

- 지식재산도시 사업의 법적·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 계획을 제시
- 유형화 모델의 개발, 지정 절차, 절차 단계별 주요내용

□ (주요 내용 3) 추진활성화 전략 및 지원방안

- 실행력 제고방안, 활성화 지원방안, 가치효용 극대화 방안

제 2장. 지식재산과 도시

제 1절 지식재산의 중요성

-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이 기업가치를 결정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요인으로 자리매김
 - S&P 500 기업의 가치변화 : ('75) 무형자산 17%, 유형자산 83% → ('15) 무형자산 87%, 유형자산 13%('17, OCEANTOMO社)
-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핵심·표준기술을 선점한 국가/기업의 승자 독식이 심화
 - 혁신적 아이디어 등 소프트파워가 경쟁력의 원천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증대
- 미-무역분쟁은 미래 신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술패권 경쟁으로 이에 따른 지식재산 확보 및 보호강화가 중요
 - 중국의 기술이전강요, 해외특허라이선스에 대한 차별 규정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시발점

제 2절 도시경쟁력과 도시단위사업의 필요성

- 도시가 지속 가능한 국가성장을 주도할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며 “특화도시”의 발전은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
- 산업이나 장르별 특성을 기준으로 지원한 사업은 지원산업에 대한 집중도는 높일 수 있으나 도시 각 분야별 성장의 격차 발생과 산업간 종합적 방향성 부재의 한계가 존재
- 도시단위 지원사업은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와 연계가 가능하며 유기적 결합을 통해 도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제 3절 지식재산도시 필요성 및 개념

-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의 경쟁우위확보를 위한 지역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정책개발을 통한 지역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지역 단위 지식재산 지정 사업을 통해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별 IP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지식재산도시는 도시특화모델을 적용 것으로 지식재산 기반하에 도시 스스로 지식재산의 지속적인 창출 공유·활용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도시의 중점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
- 본 연구에서 「지식재산도시」의 정책적 개념은,
 - 특허청의 지원·협력 하에 지식도시化 계획·수립 및 이를 바탕으로 지역내 지식재산 환경/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당도시가 IP 인프라를 갖추고 지식재산이 도시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로, 특허청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은 도시”임

제 3장. 해외 지역지식재산정책 및 도시지정사업 사례

제 1절 중국

□ 중국의 지역지식재산 정책

□ 국가지식산업국(SIPO)은 각 지역 지식산업국이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 「전국 지역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업무 요점(2014年全国地方知识产权战略实施工作要点)」을 발표

- (지역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업무 능력 강화) 지역 지식산업국의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전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기초 업무 분류 모델의 구축) 구역 지식산업국의 전략 실시 업무를 해당 지역에 최적화하여 실시하기 위해 중앙 정부는 기초 업무 분류 모델을 구축하고, 각 지역 지식산업국에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 (구역 지식재산권 정책 연구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 구역의 산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수요를 파악하여 구역 지식재산권 정책과 구역 발전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이 구역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정리·분석하도록 지도
- (구역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업무 능력의 지속적인 강화) 각 업무 부처가 협력하여 구역 지식재산 전략실시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지식재산 업무의 규범화, 체계화, 제도화를 추진

□ 중국의 국가지식산업국(SIPO)은 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시범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 지식재산의 부흥을 꾀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군민 융합 시범지역, '18년 8월) 지식재산권 군민 양방향 전환 활용과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의 군대와 지역의 조직관리시스템, 업무운영시스템, 정책제도 시스템을 완비

요약문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전략추진프로젝트 시범도시, '17년 7월) 특허유도산업 및 기업 발전업무 체제 수립,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운영능력 제고,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능력 강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관리수준 향상,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최적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인재 양성 강화 등을 지원
- (지식재산권 담보용자 및 특허보험 시범지역, '16년 8월) SIPO가 제정한 업무방안에 따라 특허권 담보용자 및 특허보험 시점·시범업무를 실시

□ 중국의 지식재산 시범도시 사례

| | | | |
|------|--|--|--|
| 추진배경 | 시범도시 사업을 통해 각 도시의 지식재산권 관리수준 및 능력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을 강화 | | |
| 추진경과 | 현재까지 5차례의 발표를 통해 총 70개의 국가지식재산권 시범도시를 선정 | | |
| | 구분 | 선정 시기 | 시범도시 |
| | 제1차 | '12년 4월 | 우한, 광저우, 선전, 청두, 항저우, 지난, 칭다오, 하얼빈, 난징, 다롄, 시안, 창샤, 쑤저우, 난통, 전장, 정저우, 뤼양, 동잉, 엔타이, 푸저우, 취안저우, 윈저우, 우후 등 23개 도시 |
| | 제2차 | '13년 8월 | 샤먼, 닝보, 장춘, 둥관, 우시, 주저우, 타이저우, 웨이팡, 쯔보, 허페이, 자싱, 난양, 후저우, 창지, 구이양, 창수, 쿤산 등 18개 도시 |
| | 제3차 | '15년 3월 | 창저우, 안양, 상탄, 판즈화, 포산, 중산, 베이징시 차오양구, 난창, 장인, 단양, 장자강 등 12개 도시 |
| | 제4차 | '16년 5월 | 몐양, 후이저우, 더양, 베이징시 하이뎬구, 상하이시 민항구, 톈진시 시칭구, 충칭시 장비이구, 지모, 하이먼, 닝궈, 이우 등 11개 도시 |
| 제5차 | '18년 5월 | 안후이성 마안산시, 광둥성 산터우시, 허베이성 스자좡시, 쑤성 쉬저우시, 충칭시 주룽포구, 라오닝성 선양시 6개 도시 | |
| 신청자격 | 시점·시범도시 신청의 범위는 조건에 부합하는 각 성 자치구의 도시 | | |
| | 〈시점·시범도시 신청 기본요건〉 | | |
| | 시점도시 | 시범도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정부는 지적재산권업무를 중시하며 그를 중요한 업무일정에 삽입할 것 ② 건설한 지적재산권업무체제와 일정한 수의 지적재산관리인원 보유할 것 ③ 年 특허출원건수가 1,000건 이상 또는 해당 성(省)의 年 특허출원건수의 1/50이상일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소 2년이 경과한 시점도시일 것 ② 지적재산관리체제가 현저하게 강화되어 지적재산관리체제가 구(区)와 현(县) 정부까지 구축되었을 것 ③ 年 특허출원건수의 증가율이 전국 시점도시 중 앞 1/3에 속할 것 ④ 발명특허출원건수가 전체 특허출원건수 중 점유율 | |

| | 시점도시 | 시범도시 |
|------|--|--|
| | <p>점할 것, 또는 본 성과 동급의 도시(이미 시점도시의 기준을 획득한 도시는 제외)로 특허출원건수 랭킹이 1/2안에 속할 것</p> <p>④ 지식재산권업무가 비교적 독특한 지역특징과 발전 잠재력이 있을 것</p> | <p>이 전국 시점도시 중 앞 1/3에 속할 것</p> <p>⑤ 해외특허출원이 전체 특허출원건수 중 점유율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현저하게 높을 것</p> <p>⑥ 행정집행이 주동적이고 효과가 현저하며, 특허분쟁 사건의 연 종결율이 95%초과(95%포함)할 것</p> <p>⑦ 지식재산권의 주요한 프로젝트가 본 도시의 경제발전, 과학기술진보 또는 간부(干部)의 업적평가체계를 포함할 것</p> <p>⑧ 지식재산권업무가 최소한 특정된 방면에 특히 우수하여 동급 도시에 시범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p> |
| 선정기준 | <p>(선정절차) 시정부가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시점시범도시 업무초안을 제출 →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도시를 포함하는 성급의 지식재산권국의 협조를 받아 기본조건과 평가도시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신청도시 평가 →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평가대상도시에 대해 비준여부를 최종결정</p> <p>(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부의 지적재산권프로젝트의 정기연구, 배치, 심사의 상황 • 특허출원이나 등록권리건수가 시점도시 이전의 증가폭 상황이나 해당 성이나 지역의 동급(시점 도시가 아닌) 시범도시와 비교했을 때의 증가폭 상황 • 강화된 지적재산관리체제구축의 상황 • 지적재산권 법규제정 수준 제고의 상황 • 지적재산 중개서비스기관 완비의 상황 • 시정부의 지적재산권프로젝트에 대한 조건, 금융자금지력 증가의 상황 • 지적재산보호를 위한 건설한 협력 메커니즘의 상황 • 지적재산관리체제 행정집행의 상황 • 지적재산 주요지표상 시장경제발전, 과학기술진보와 간부의 업적평가체계의 상황 • 시정부가 해당 시의 지식재산권 시점업무의 결의와 요구 등 관련 내용을 유효적으로 집행한 상황 • 시정부가 국가지식재산권국의 관련 문서의 취지를 관철 집행한 상황. | |
| 지원규모 | 재정적 지원은 없음 | |
| 지원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시점도시의 지원기간은 2년, 시범도시는 무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점도시) 2년마다 재신청·심사, 국가지적재산국의 기준을 얻은 후 새로운 기간 동안 시점 도시 재지정 - (시범도시) 지원기간은 무기한이나 매 2년마다 시범도시에 대해 1회의 심사를 진행, 불합격 시 시범도시 취소 • 지적재산 관련 국가 중요행사를 관련 도시에서 개최하거나 진행하는데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 시범도시나 시점도시로 선정되면 해당 도시 공무원의 업적으로 평가 받음 | |
| 시사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지정방식- 시점도시와 시범도시를 구분하여 시점도시로 기준을 받은 도시가 스스로 수준을 향상하여 시범도시로 전환(Shift)할 수 있는 운영방식 | |

요약문

제 2절 일본

□ 일본의 지역지식재산 정책

□ 일본 특허청(JPO)은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地域知財活性化行動計画)」을 수립하고 이를 발표함(2016년 9월 26일)

○ (목적) 지식재산의 취득·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 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일본의 성장력 향상 및 지역 창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주요내용) 지속적인 지역·중소기업 지원 실시, 지역·중소기업 지원 체제 구축, 핵심 성과지표 설정 및 PDCA 사이클 확립

□ 일본은 9개 지역에 지식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를 설치하여 지역지식재산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각 지역별 지식재산전략추진계획(知的財産戦略推進計画)을 발표

□ 〈지역중소기업지식재산지원력강화사업(地域中小企業知的財産支援力強化事業)〉

○ 일본 내 각 경제산업국 및 내각부 오키나와 종합 사무국의 지식재산실에서는 지역의 지식재산 지원 체제의 구축 또는 제휴 강화를 통한 지식재산 지원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선도적·선진적 지적재화의 대처를 지원

○ 또한, 해당 사업은 의욕이 높은 지역에 대해 선도적·선진적인 대응을 반주형(伴走型) 지원 등을 통해, 지식재산을 활용한 지역재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본의 지재선진도시(知財先進都市) 사례

| | | | |
|------|--|---|--|
| 추진배경 | 특허청에서는 지적재산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국가와 지방단체와의 연계의 강화라는 사고방식 하에 2008년도부터 「지적재산추진계획 2008」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지적재산 전략에의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조직을 추진하는 지자체와의 연계를 실시 | | |
| 추진경과 | 2009년도 20개 지자체 응모, 9개 지자체 선정 | | |
| 신청자격 | 응모의 주체는 시(市)정(町)촌(村)로 하며, 응모 가능한 제안은 1건으로 제한함 | | |
| 선정기준 | 제안공모에 의한 모집 선정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가지 항목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하여 지정 • 지식재산활동의 의한 지역진흥의 효과 가능성 •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지자체의 독자적 추진정도 • 우수한 선도성·모델성 • 지속적인 추진 가능성 • 원활하고 확고한 실시방안 | | |
| 지원규모 | | | |
| 지원내용 |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특허청이나 중소기업청, 농림수산성 등의 다양한 시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을 함 - 1년차에는 권리취득과 관련한 지원을 하며, 2년차에는 사업화 위주의 지원 | | |
| | 지자체 | 추진내용 | |
| | 주된 지원내용 | | |
| | 北海道 帯広市 | 「브랜드 쇼케이스」에 의한 지역브랜드의 전략적 구축 오비히로시에서는 낙농제품 등 개별 상품으로서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지만 각 조직이 산재되어 있어 브랜드 힘이 분산되어 있다. 지역전체로서 강력한 브랜드화를 꾀하기 위해 지역상품패키지(의장)나 생산과정의 스토리와 등의 검토를 통해 지역상품의 브랜드화를 구축하는 수법 「브랜드 쇼케이스」(공통 manual)을 작성하고, 다른 상품에도 응용가능하도록 지역공통의 브랜드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상품패키지의 디자인 검토나 지역상품 생산과정에서의 스토리 검토 등에서 지재전문가 파견 • 공통 매뉴얼이 되는 「브랜드 쇼케이스」 작성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설치 등 지원 |
| | 静岡県 富士宮市 | 「니지마스(무지개송어)」 가능성 연구·가공품화에 의한 지역 브랜드화 후지노미야시에서는 「food valley 구상(음식을 활용한 마을만들기)」을 내걸고, 생산량 일본 제일의 「니지마스」의 가능성·가공품화 연구를 추진하는 것에 의해 건강보조식품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지마스」 가능성연구성과의 제품화와 새로운 연구에 참가하는 기업·연구기관 및 가공업자에의 지적재산보호·활용에 관련된 전문가 파견 등 지원 • 관계기업, 농·어협관계자를 위한 지역 브랜드에 관한 세미나 개최 |

요약문

| 지자체 | 추진내용 | 주된 지원내용 |
|-------------|---|---|
| | 니지마스 가공품 제조업, 니지마스 양식업의 진흥을 도모함과 함께 거듭 음식의 지역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 |
| 大阪府東 大阪市 | <p>지역을 알린 고부가가치제품제조업자에의 전환 촉진</p> <p>히가시오사카시에서는 「상품화 마을 추진구상」을 바탕으로 제조업자의 신기술·신제품의 개발을 촉진시켜 디자인력의 향상에 의한 매력 있는 최종상품을 만들어 내는 기업의 증가를 목표로 한다. 또한, 지적자산을 활용한 최종제품을 「상품화」 「多種다양한 제품」 「높은 기술력」의 상징으로서 「히가시오사카 브랜드 제품」을 인정하고 수요확대를 노리고 있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재전문가를 포함한 종합지원팀을 파견하고 지재 컨설팅 등을 지원 • 지역내에 설치한 「상품화 지원시설」에 지재전문가를 배치 • 대학 등과 연계한 「감성을 움직이는 디자인」 등 연구회의 개최지원 |
| 시사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부처와의 시책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지원 • 지역의 특색이 잘 들어나는 사업을 추진 • 「지적재산기본법」을 시행하여 지식재산의 창조·보호 및 활용을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 | |

제 4장. 국내 지역지식재산 정책 및 도시지정사업 사례

제 1절 국내 지역지식재산 지원정책

-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하여 지식재산서비스 강화를 도모
- 전국적으로 24개('17년 기준) 지역지식재산센터(RIPC)가 운영
- 동 센터를 통해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종합민원상담, 지식재산권 설명회, 지자체와 발명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 등을 수행

□ 지역 지식재산 활동의 문제점

- IP 서비스기관 및 인력의 대다수가 서울 및 대전 지역에 집중되는 등 지역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지자체내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부재한 상황으로 지자체마다 다양한 부서에서 1~2인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담당하고, 이전 업무와 연관없는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이 낮음

제 2절 (舊)지식재산도시 지정사업 분석

- (추진배경) 도시(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촉진 정책으로, 주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내 지식재산 자원을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경과) 2010년 공모를 시작으로 매년 5개씩 10개의 지식재산도시를 선정하여 지역 주민/공무원 등 지재권 사업을 발굴·추진 '13년에 지식재산도시 사업종료
 - ('10) 광주 남구, 경북 안동, 충북 제천, 강원 원주, 대구 달서구 선정(5개)-> ('11) 제주, 전남 광양시, 경남 진주시, 부산 북구, 광주 광산구
- (신청자격) 지식재산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전국 기초 및 광역 지자체
- (선정기준) 추진체계의 적합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지역별 지식재산현황에 대한 적격심사
- (지원규모) 지자체별로 1년 1억원씩 3년간 총 3억원 내외 지원
- (지원내용) 조성비용지원, 공모사업에 우선원부여, 행사개최 등의 인센티브
- (지원내용) 조성비용지원, 공모사업에 우선원부여, 행사개최 등의 인센티브

요약문

- (시사점) Top-Down방식으로 인한 혁신주체 및 컨트롤 타워의 부재, 지역 고유 특성의 부재 및 사업내용의 중복성, 지원프로그램의 단일성 사업중심 운영, 법적근거 부재

제 3절 도시지정 특화사업 사례

□ 문화도시(문화체육관광부)

| | | | |
|----------|--|-------------------------------------|--------------------------------------|
| 추진배경 | 창의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으로서 ‘문화도시’의 가치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문화균형발전 견인 | | |
| 추진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14)으로 문화도시 지정근거 마련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 | |
| 추진경과 | '19년 하반기 5개 내외, '22년까지 30개 내외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함 | | |
| 신청자격 | 광역지자체(시·도) 및 기초지자체(시·군·자치구) | | |
| 지정절차 | 문화도시 지정절차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정신청으로부터 문화도시 지정까지 크게 5단계로 구성되는 과정 및 절차로 구성 (1단계: 문화도시 지정신청) → (2단계: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승인) → (3단계: 예비사업 실행·관리) → (4단계: 문화도시 지정심의) → (5단계 : 문화도시 지정) | | |
| | 〈지정신청 분야〉 | | |
| | 기본 분야 | 관련법 근거 | 세부 분야(예시) |
| | 역사전통 중심형 |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육성특별법 등 | 역사/전통 등 |
| | 예술 중심형 | 문화예술진흥법 등 |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국악/사진/건축/어문 등 |
| | 문화산업 중심형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 영상/음악/게임/출판/광고/만화/ 대중문화예술/문화콘텐츠 등 |
| 사회문화 중심형 | 지역문화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 생활문화/여가/인문/문화교육 /다문화/시민문화 등 | |
| 지역 자율형 | 문화도시 조성 관련법 일반 | 기본분야 융·복합/생태문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 |

| 선정기준 | 문화도시 지정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협의 여부(기초-광역 지자체 간) 및 법령상 포함내용을 반영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해 적격성 검토·평가 | |
|-----------|---|--|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 | 문화도시 준비상태 |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례, 기초-광역 MOU 체결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확보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전문 추진조직 확보 예비사업 실행결과를 바탕으로 파악한 지역의 문화기획·추진역량 |
| | 문화도시 추진기반 확보 | 지역주민 문화활동 참여확대 및 촉진 가능성 문화전문인력이 활동 또는 정주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문화기획자, 예술인, 기관 또는 단체) 지역이 보유한 문화자산의 창의적 개발 및 활용 능력 특화된 문화브랜드 생성 및 관리 능력 |
| 문화도시 사업효과 | 문화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지역자치 능력 향상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문화거점 조성 및 문화재생 효과 기여 문화를 통한 성장동력 생성 및 사회·경제적 효과 유발 | |
| 지원규모 | 각 문화도시에 5년간 최대 200억원(총사업비 기준) 이내 범위 지원 추진 기본사업비(공통) : 75억원 문화경영 / 도시특화 지원 기본사업비 선별사업비(차등) : 125억원 효과파급 / 하드웨어 지원 선별사업비 | |
| 지원내용 |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경영체계 구축 / 도시의 문화력 강화 / 문화적 사회효과 발현사업 등 | |
| 추진체계 | 문화도시별 설치되는 문화도시센터를 중심으로 도시문화협치구조에 의한 문화거버넌스를 유지하면서 사업추진 - 문화도시센터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문화네트워크 공유테이블'을 운영하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사업행정부서가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지원 - 도시 내에 정식협의체 구조를 조직하고 사업의 추진-지원-관리를 함께 이끌어나가는 구도로 문화협치 중심의 사업추진체계를 구성 | |
| 시사점 | 개별법령에 의한 추진 근거 확보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지정신청 분야 구분 예비사업-본사업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사업운영 | |
| 담당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 |

□ 평생학습도시(교육부)

| | |
|------|---|
| 추진배경 | 제4차 산업혁명,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역 수요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인프라 강화를 통한 주민 평생학습 기회 확대 |
|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개정(14.1.)으로 국가·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국가평생교육추진체제 근거 마련 |

요약문

| | | | | |
|--------------------------|--|--|-----------------|-----------------|
| | <p>▶ 평생교육법 제15조 (평생학습도시)</p> <p>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p> <p>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 완료('12.8.)</p> | | | |
| 추진경과 | <p>'99년 년도 광명시를 시작하여 '02년 전국으로 확대추진</p> <p>- '02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여 155개('18)의 평생학습도시를 선정 및 운영</p> | | | |
| 신청자격 | <p>-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지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로서 평생학습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평생학습 추진계획이 우수한 7개 내외 지역</p> <p>-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지원) '17년까지 지정된 평생학습도시 중 10개 내외 지역</p> | | | |
| | 구분 | 대상 시군구 | | 신청 가능 사업 |
| | 단년 지원 | 평생학습도시 미지정 시·군·구 | | 평생학습도시 지정 |
| 평생학습도시 既지정 시·군·구 | |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 | |
| 선정기준 | <p>시·도 예비심사(30%)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본심사(70%) 결과를 종합하여 지원대상 및 시·군·구별 지원금 확정</p> | | | |
| | 사업 구분 | 주요 기준 | | |
| | 신규도시 지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도시 기반(조례, 조직, 네트워크, 예산 등) • 평생학습도시 비전(지역의지, 발전계획, 지역의견수렴 등) • 사업 추진 시행(취·창업 및 학습형 일자리 사업 내용 및 효과 등) ※ 경력단절여성 및 은퇴(예정)자 대상 일자리 사업 필수 • 사업성과관리(성과지표 내용 및 체계) | | |
| 기존도시 특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화 정도(평생학습도시 실행계획, 사업내용 및 관련실적) • 명료성(사업목표의 구체성, 목적과 내용 일치도) ※ 경력단절여성, 은퇴(예정)자 참여가능성 고려 • 충실성(강사확보, 추진체제, 학습자 관리, 예산) • 성과관리(지표 내용 및 관리 계획, 활용 가능성) ※ '13년도 사업결과 우수지역 가점 부여 | | | |
| 지원규모 | (단위 : 백만원) | | | |
| | 구분 | 금액 | 지원 | 단가 |
| | 평생학습도시 지정 | 630 | 7개 내외 | 시·군·구당 90백만원 내외 |
|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 500 | 10개 내외 | 시·군·구당 50백만원 내외 | |
| 단, 지원금액의 100%이상 지방비 대응투자 | | | | |
| 지원내용 | <p>선정된 도시에는 초기 인프라 구축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학습결과 표준화 사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예산지원 및 지속적 활성화 유도</p> <p>네트워크 사업 40개 도시, 특성화 사업 48개 도시, 컨설팅 19개 도시 지원</p> | | | |

| |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도/시·군·구 |
|------|--|---|---|
| 추진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 사업공고 • 지원대상 지자체 최종 선정 • 사업비 교부 및 관리 • 사업관리 총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계획 수립 • 사업신청 지자체 계획 평가 및 결과 보고(→교육부) • 성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및 연수 - 사업결과 보고(→교육부) • 참고자료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서 및 운영 계획 작성·제출 ※ (시·도) 시·군·구 예비심사 • 사업 시행 • 사업 성과관리 및 자료조사 협조 •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교육부, 국가진흥원) |
| 시사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특성화 도시의 단계적 도시 지정방안 • '01년부터 「평생교육법」의 개괄 조항에 근거하여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였고, '07년에 명시적 규정 마련 | | |
| 담당부처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 |

제 4절 시사점 및 지식재산도시사업의 방향성

-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지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각 도시의 배경·환경 및 도시의 특색을 반영하여 고유한 지식재산도시 추진
- 지식재산도시 지정 후 지식재산권 관리수준 및 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한 단계별 사업 운영방식 도입
-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및 전담 인력 배치
- 법령제정을 통한 사업 추진의 법적근거 마련
- 주민참여로 도시에 대한 비전(Vision)형성과 공유

제 5장. 지식재산도시 지정사업

제 1절 사업의 법적·정책적 근거

- (법적근거) 지식재산도시 지정 사업은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발명진흥법」 제3조 제2항 제4호 발명진흥 개괄조항에 근거하여 지식재산도시 지정을 추진

〈 발명진흥법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

- ① 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 2. 발명 활동의 진작과 발명 성과의 권리화 촉진
 - 3. 우수 발명의 이전 알선과 사업화 촉진
 - 4. **그 밖에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추후 지식재산도시 지정에 관한 개별근거 법률제정이 필요

- (정책적근거) 현 정부는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현하고 지역의 자원과 인재를 활용한 지역의 혁신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 변화 및 주요 정책 목표·과제로 설정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특허청은 「제 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로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제고 및 브랜드 개발, 향토기업 IP 역량 강화 지원을 제시하고 있음

제 2절 지식재산도시 지정사업 기본구성

- (사업명) 지식재산도시사업
- (사업의 정의) 지식재산도시 지정에 따른 지역지식재산 활성화
- (사업의 기본 대상) 지역 기초 시·군
- (사업 규모) 사업비는 예비사업비와 도시사업비로 구성되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국비-지방비 5:5 매칭 펀딩
 - (예비사업비) 지식재산도시 지정 첫 해에 추진체계구축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지원
 - (도시사업비) 도시사업비는 기초사업비와 심층사업비로 구성
 - 매년 기초 사업비(도시 당 매년 약 5억원)를 지원하되, 2년차 이상 도시는 도시사업비(도시 당 최대 2억원)를 지원
- (사업 내용)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재투자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지원
 - 지식재산도시 사업은 예비사업기와 본사업기로 나뉘어서 진행되며, 본사업기는 지식재산도시 육성기, 지식재산도시 확장기로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
 - (예비사업기)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체 구성 등 지식재산도시 운영에 관한 전반을 계획 수립
 - (본사업기) 본사업기는 육성기와 확장기로 구분하여 지원
 - (지식재산도시 육성기) 지식재산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이행지원으로 IP 서비스 지원 고도화와, 지식재산도시 유형에 따른 특성화 사업 지원

요약문

- (지식재산도시 확장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지정기한) 지식재산도시 지정기한은 5년으로 함

제 3절 지식재산도시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구성)** 사업추진체계상의 주체는 그 기능 및 역할에 따라 크게 사업추진주체, 사업참여주체, 행정지원주체, 사업지원주체로 구성됨



○ 사업추진주체를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 1) 지역지식재산센터의 기능 확대방안과 2) 지식재산도시 경영전문조직 설치 방안이 있음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기능확대를 통한 사업추진) 오랜 경험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는 잘 형성되어 있으나 운영인력부족 및 신분불안으로 인한 높은 이직률, 직원들의 겸업 등의 문제로 안정적 운영의 어려움이 존재함
- (지식재산도시 경영전문조직설치를 통한 사업추진)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해 업무 집중도를 확보할 수 있으나 기초지자체에서 IP 전문인력발굴의 어려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하는 어려움이 존재

○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한계점에 대한 고찰

- 지역지식재산센터는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지역지식재산센터]의 구조로 인해 지역지식센터의 주요업무 범위가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규모가 크지 않고(적은 수의 인력으로 운영중), 지역 상공회의소나 지역테크노파크내 위치하여 지식재산도시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기능, 규모, 입지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제 4절 지식재산도시 사업 예산

□ (사업 예산) 지식재산도시 지정사업 3차년도까지 총 47억원 예산 필요

□ (사업 예산 구성) 예비사업비(1억) + 도시사업비(5억-최대 7억)으로 구성

□ (소요 예산 추이) 지식재산도시 지정사업 3차 년도까지 총 53억원 예산 필요

〈표 요약 2〉 연도별 예산 추이(예상)(국비)

| | | 0년 | +1년 | +2년 | +3년 |
|----------|-------|---------------|----------------|----------------|----------------|
| 신규 지자체 수 | | 2 | 3 | 3 | 3 |
| 총 지원지자체수 | | | 5 | 8 | 11 |
| 도시사업비 | 심층사업비 | | | 4억 (2개×2억) | 4억 (2개×2억) |
| | 기초사업비 | | 10억 (2개×5억) | 25억 (5개×5억) | 40억 (8개×5억) |
| 예비사업비 | | 2억 (2개×1억) | 3억 (3개×1억) | 3억 (3개×1억) | 3억 (3개×1억) |
| 총예산 | | 2억 | 13억 | 32억 | 47억 |

요약문

□ (예산 조달 방식)

-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발전계정으로 편성·조달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고려하여 현물로 출자

제 5절 추진절차

- 지식재산도시 추진절차는 사업시행 계획 공고→사업계획서 접수→지식재산도시 사업계획서 평가→지식재산도시 지정통보→지식재산도시 사업추진→사업평가의 단계로 진행



제 6장. 지식재산도시 지정

제 1절 지식재산도시 지정

- **(지식재산도시유형 지정방식)** 핵심가치에 근거하는 기본적인 사업유형을 구분하되 도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탄력적인 유형구조 지정

| 구분 | IP-첨단산업도시 | IP-창업도시 | IP-문화관광도시 |
|------------|---|--|--|
| 개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신산업 혁신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화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기관과 대학 연구소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내 창업기업의 기술 지식재산권화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역사 및 전통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로 승화시켜 이를 지역지식재산권화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도시 |
| 주요 사업 및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사업 및 혁신산업에 대한 핵심기술 정보 공유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IP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을 위한 기술 정보제공 산학연 연구개발협력 창업공간 및 기술장비대여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산업을 통한 지역브랜드 구축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 문화제와 연계한 축제콘텐츠 개발 |
| 예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IP거점도시 인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실리콘밸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전통문화의 도시 안동 |

제 2절 사업추진단계

- 지식재산도시 지정절차는 지자체의 지정 신청부터 지식재산도시 사업평가까지 3단계로 구성되어짐
- (1단계: 지식재산도시 지정신청 및 지정심의) 지자체에서 지식재산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특허청에 지식재산도시 지정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받아 지정됨
 - (2단계: 사업수행단계) 조성된 지식재산도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

요약문

- (3단계: 사업평가) 사후관리적 측면에서 지식재산도시 지정 후 1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

제 3절 추진 단계별 주요내용

□ (1단계: 지식재산도시 지정신청 및 지정심의) **지식재산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신청**

- 조성계획 수립의 주요내용은 크게 도시현황진단, 주요사업계획, 사업추진시행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현황진단) 도시 현황 조사 및 진단에 대한 내용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기반 형성에 대한 진단
 - (사업계획) 지식재산도시 사업계획안으로 조성방향, 사업구상 및 계획, 지정분야 특성화 계획, 추진체계, 예산 투입계획에 대한 내용을 작성
 - (사업운영관리) 지식재산도시 추진성과 및 지속가능 관리계획 및 추진 로드맵을 구성

□ 지식재산도시 평가 심사

- 지식재산도시 평가위원단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

□ 지식재산도시 지정 심의

- 선정위원회는 선정평가단이 추천한 후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지식재산도시로 최종 선정함

□ 평가지표 개발방법 및 지표구성



(2단계: 사업수행단계)

□ 구성된 지식재산도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

* 주요 사업 수행 내용은 다음장의 추진 활성화 전략을 참고

요약문

(3단계: 사업평가)

- (중간평가) 사후관리적 측면에서 지식재산도시 지정 후 1년 마다 평가를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지식재산도시 심층사업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평가가 일정수준에 미달될 경우 지정 해지 및 철회
- (사업종료 최종평가) 지식재산도시는 최종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서를 제출하고 이를 지식재산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인증여부를 결정

제 7장. 지식재산도시 추진 활성화 전략 및 지원

제 1절 실행력 제고 방안

- 개별 근거 법령 마련
 - 지자체별로 '지식재산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자체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식재산 기반을 조성
- 지식재산도시 전문가 통합운영제도 도입
 - 지식재산도시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IP 코디네이터를 통합적으로 임명 및 운영하는 통합구조의 전문가 통합운영제도가 필요

제 2절 활성화 지원 방안

| 사업단계 | 내용 | IP 첨단산업 | IP 창업도시 | IP 문화·관광도시 |
|-------|------------------|--|--|---|
| 본 사업 | 육성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특화전략사업과 연계 ② 기업군, 산업군에 대한 IP 서비스 지원 ③ 기술거래 및 기술이전 지원 ④ 해외진출에 대응한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② 코워킹플레이스 지원 ④ IP펀딩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 브랜드 구축사업 ② 지리적표시 권리화 ③ 지역 축제 및 관광지에 대한 상표권 취득 ④ 발명거리 조성 |
| | | ① 기술 금융 및 IP금융지원 | | |
| | II. IP지원 서비스 고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적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② 지식재산 전주기 원스탑 서비스 ③ 지식재산서비스업의 지역내 이전 지원 | | |
| 예비 사업 | 도약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휴먼웨어 구축) 사업 추진 운영조직 구성 ② (소프트웨어 구축) 개별 근거법령 마련, 발명 문화형성 및 지식재산 인식제고 | | |

제 3절 가치효용 극대화 방안

□ 다양한 혁신주체들과의 사업연계 및 협력 추진

- 중앙정부와 각 부처 및 기관에서는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타부처 사업과의 복합추진에 있어서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협력방안 도입 필요

□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류 협력지원

- 지식재산도시로 지정되는 각 권역별(2-4개)를 지식재산도시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네트워크 도시로 구성 및 운영

제1장

서론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4차 산업혁명, 미·중 무역 분쟁 등 글로벌 환경 변화로 지식재산이 시장 지배력과 글로벌 가치사슬 장악을 위한 화두로 부각
 - 세계경제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지식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국가에서 혁신이 생겨나고 부(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World Economic Forum, '16.1)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승자가 되는 4가지 조건 중 하나로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꼽음
 - 지식재산 등의 무형자산이 노동·자본 등 유형자산을 추월하여 기업가치를 결정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요인으로 자리매김
 - * S&P 500 기업의 가치변화 : ('75) 무형자산 17%, 유형자산 83% → ('15) 무형자산 87%, 유형자산 13%('17, OCEANTOMO社)
- 지방자치체도의 심화, 지방분권화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 21세기 경쟁의 단위는 국가가 아닌 지역이 되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첩경이 되고 있음
 - 국가적으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초광역경제권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업가적 마인드가 중시되고 있음
 - 지방정부는 기존의 중앙정부 업무의 단순한 집행이 아닌 정책개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

-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이를 통한 지역단위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
 -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이 강조되는 이유는 국가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때 자본 및 노동의 투입 증가보다 기술혁신이 중요한 원천이고,
 - 과거 단순한 지리적 구획의 개념이었던 지역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김진수, 최명신, 2007)
- 지역혁신체제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강조되면서 지역의 혁신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으나 미흡한 상황
 - 특허청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지역의 지재권 창출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식재산서비스 강화를 도모
 - 지역의 발명풍토조성 및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지역 내 지식재산권 창출촉진 및 적극적 활용도모, 지역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 지자체내 특허전담 조직이 없고 상공회의소 등에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두고 '06년부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
 - * 지역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종합민원상담, 지식재산권 설명회, 지자체와 발명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 등을 수행
-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지식자산을 전략적으로 개발·활용하는 모델 마련 필요
 - 지역의 발전은 R&D, IP 전문 인력, IP 서비스 기관 등 IP 혁신 인프라가 얼마나 해당 지역에 집적되어 있느냐가 중요요인임
 - 그러나 IP 서비스기관 및 인력의 대다수가 서울 및 대전 지역에 집중되는 등 지역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함

- 도시특화 발전모델의 하나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지식재산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지자체를 지재권 정책 협력자로서 동참시킬 정책 수단 필요
 - 지식재산도시 지정 사업은 지역별 특성 및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별 IP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지식재산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의 지식재산 시책을 활성화하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

- 지식재산도시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전략적 지식재산 창출·활용 정책 모델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노력은 지식재산부국 코리아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임

제 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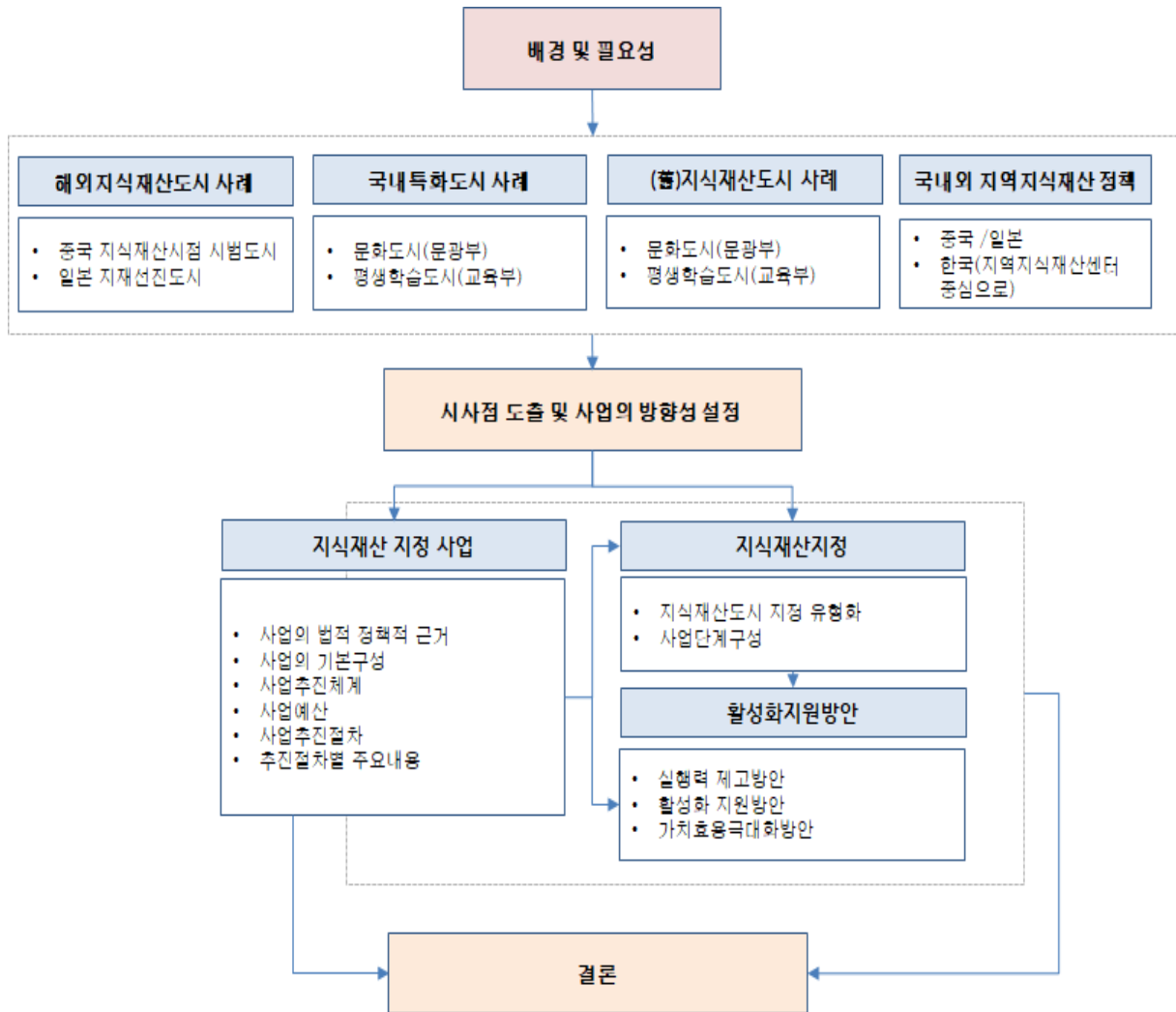
- ‘지식재산도시 지정사업’의 기본틀을 구상하고 이에 따른 운영방안과 활성화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 지식재산도시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

- (주요 내용 1) 국내·외 지식재산도시 관련 사례
 - 국외 지식재산도시 사례, 국내 특화도시사업 사례, (舊)지식재산도시 실패요인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추후 사업의 방향성 설정

- (주요 내용 2) 지식재산도시 지정 사업 및 지정
 - 지식재산도시 사업의 법적·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
 - 유형화 모델의 개발, 지정 절차, 절차 단계별 주요내용

- (주요 내용 3) 추진활성화 전략 및 지원방안
 - 실행력 제고방안, 활성화 지원방안, 가치효용 극대화 방안

〈그림 1〉 연구의 구성



제2장

지식재산과 도시



제 2장. 지식재산과 도시

제 1절 지식재산의 중요성

- 최근 4차 산업혁명, 미·중 무역 분쟁 등 글로벌 환경 변화로 지식재산이 시장 지배력과 글로벌 가치사슬 장악을 위한 화두로 부각
 - 지식재산 등의 무형자산이 노동·자본 등 유형자산을 추월하여 기업가치를 결정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요인으로 자리매김
 - * S&P 500 기업의 가치변화 : ('75) 무형자산 17%, 유형자산 83% → ('15) 무형자산 87%, 유형자산 13%('17, OCEANTOMO社)
-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핵심·표준기술을 선점한 선도 국가, 기업의 승자독식이 심화됨에 따라 혁신적 아이디어 등 소프트 파워가 경쟁력의 원천
 - 자원을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하드파워 시대에서 상상과 아이디어로 혁신을 이끌어내는 소프트파워 시대로 전환
 - 즉,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지식재산화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좌우
 - 혁신적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혁신적 아이디어가 구현되어 산업적으로 활용되고, 지식재산으로서 제대로 보상을 받으며,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이어지도록,
 - ① 융복합 제품·서비스를 특허, 저작권, 상표 등으로 빈틈없이 보호하고
 - ② 빠른 기술변화, 쉬운 도용에 대한 신속하고 강한 보호체계를 마련하며
 - ③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로 미래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함

- 세계경제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지식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국가에서 혁신이 생겨나고 부(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World Economic Forum, '16.1)
 -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을 저성장의 돌파구로 삼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정책*을 마련
 - * 美:첨단제조파트너십(AMP), 日:미래투자전략 2017, 中:중국제조 2025 등
 - 연간 390조('16, 세계은행) 규모의 세계 지식재산 시장은 두뇌가 자원인 우리에게 고급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
 - * IP집약산업으로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 : (美) 전체 일자리의 18.2%인 2,790만개 ('14), (EU) 27.8%인 6,000만개('11~'13) ('16, 미 상무부, EU지식재산청)

□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합작회사를 통한 기술이전강요, 해외 특허 라이선스에 대한 차별 규정 등 지식재산권이 시발점이 된 기술패권 다툼임

-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중국의 정책 및 관행이 기술 이전, 지식재산, 혁신 측면불공정 거래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조사 실시('17년 8월)
 -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의 「중국의 경제 및 지식재산권 침략 보고서*」 발간('18년 6월)
 - * How China's Economic Aggression Threatens the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 동 보고서는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사이버 해킹으로부터 외국기업의 원재료 접근 봉쇄 등 중국의 부당한 무역관행과 첨단기술 산업에서 세계의 지식재산권과 기술을 취득하고 경제적 침략행위를 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전략과 정책 및 관행에 대해 설명

〈중국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 획득과 산업경쟁력 강화 유형〉

- ▶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물리적 절도와 사이버 절도 : 경제스파이를 이용한 기술 및 지식재산의 물리적 절도, 사이버 스파이 및 사이버 절도, 미국의 수출통제법 회피, 위조 및 불법복제,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 ▶ 기술 및 지식재산권 이전을 강제하는 규제정책 : 외국인 소유 제한, 불리한 행정 승인 및 라이선싱 요건,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에 대한 차별적 제한,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이전을 강제하는 보안심사,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기술표준, 데이터 현지화 요구, 정부 조달 규제, 국제규범에서 벗어난 기술표준, 연구개발 강요(R&D 현지화), 반독점법을 이용한 강요, 독점 정보의 공개를 강요하는 전문가검토위원회, 기업지배구조를 이용하는 중국 공산당, 외국합작회사에 중국인 직원 배치

- ▶ 경제적 강압조치 : 원자재 이용을 제한하는 수출 규제, 수요 독점 구매력
- ▶ 정보 수집 : 과학기술정보의 오픈소스 수집, 비전형적인 정보수집가로 활동하는 미국 거주 중국인, 과학·기술·사업·재무 인재의 채용
- ▶ 정부지원을 받는 기술추구형 외국인직접투자(FDI) : 중국 국가 행위자의 기술추구형 FDI 관여, 미국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 획득과 이전에 사용된 중국의 투자 수단, 기업 인수합병, 그린필드 투자, 창업 및 벤처 자금 지원

- 이에 중국 국무원은 「중미 무역마찰에 관한 사실과 중국의 입장」이라는 백서를 발간하여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미국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함('18년 9월)
 - 지식재산권법원 설립, 지식재산권 사용료 증가 등을 근거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을 반박함
- 기술·환경의 급격한 변화 상황 하에서는 핵심·표준기술을 선점한 국가나 기업의 승자독식이 심화됨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제 2절 도시경쟁력과 도시단위사업의 필요성

I. 도시경쟁력의 중요성

- 포스트포디즘과 함께 도래한 세계화(globalism)의 흐름은 지역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 정부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지역의 정체성(Local identity)이 중요하게 부각
 - 도시경쟁력은 창업을 일으키는 기업가 정신, 중추관리 기능, 연구개발 기능, 정밀가공 기능, 제조·교역·서비스 기능 중 어느 한 기능에서 다른 도시보다 특화되어 특정 산업에서 기능적 고도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서구사회의 도시성장에 대한 시각은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의 흐름에 맞추어 경제적 효율성에 근간을 둔 물리적 환경의 구축을 중심으로 성장거점이론(the growth pole theory), 분극적개발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polarized development) 등을 바탕으로 하는 성장지향적 접근을 시도함.
 - 1970년대 이후 포스트 포디즘(Post Fordism)으로의 급격한 사회 구조의 변화는 도시의 탈산업화로 인한 경제위기와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이어짐.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이 성장하며, 다품종 소량생산, 유연적 전문화, 기술의수직적 분리, 신산업지구, 지리적 분산 및 합병과 같은 생산 환경의 변화를 초래함.
-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의 사회패러다임의 변화와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 환경의 발달로 지역경제구조의 재편화가 이루어지며, 지역혁신과 지역 단위 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글로컬라이제이션은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세계화)과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 지역화/지방화)의 합성어로, 세계적인 것이 동시에 지역적인 것이며, 세계성은 지역성에 의해 수정되고 변경 된다는 개념을 내포함.
 - 이는 세계적 차원의 압력과 요구가 어떻게 지역적 요구와 조응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지역이 가진 특수성이 세계성을 좌우하는 주체적 요소, 또는 필요조건인 측면을

반영하는 공간적 특성의 변화라고 통상적으로 이해되고 있음.

- 영상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지구가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며 반동으로 나타나는 현 시대의 시대적 특징인 한편, 국가와 도시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 세계가 하나의 사회로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함(홍순권, 2010).
- 세계화에 대한 논의가 경제·정치적 관점에서 사회·문화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접근 역시 경제·산업의 구조적 시각에서 점차 지역이 가진 문화적 역량으로서의 지역의 잠재적 가능성으로의 접근으로 확장되어 접근됨.
- 글로벌 시대의 도시의 경쟁력은 지역의 개성을 재생해 새롭게 탄생시키고, 내부의 구성원들이 긍지를 갖고, 외부인들을 유입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임.
 -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의 지역·도시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초가 됨
 - 도시거주 인구의 증가, 도시 단위 간 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도시 및 지역의 역할이 강조됨.
- 이와 함께 경제활동의 주체가 국가에서 도시로 바뀌고 국가 간 경쟁도 도시간의 경쟁으로 양상이 변화됨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이 중요 개념으로 등장함
 - 도시경쟁력은 도시단위의 공간 범위 내에서 다른 도시에 비해 어떤 강점을 지녔는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개념으로 ‘도시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도시자원과 도시능력의 전체’를 의미함(변미리, 2013)
 - 광의의 개념으로 “한 지역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과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기업, 도시 주민이 개별적으로 혹은 삼위일체가 되어 만들어 내는 창출요소로 도시의 산업경쟁력, 도시사회의 인적자원과 통합력 등 도시의 총체적 잠재력”으로 정의할 수 있음(최유진, 홍준현 2007).
 - 기존의 국가단위의 세계경쟁 체제는 로컬중심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각 도시의 정체성과 특수성이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이와 같은 사회변화 속에서 도시경쟁력의 제고는 도시가 당면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게 됨

□ 도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

- 도시가 국가의 경쟁력과 성장의 원천이라는 인식이 필요한데, 도시가 바로 삶의 공간이자 국내외에 마케팅 할 수 있는 상품(공간의 상품화)임
-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90%가 거주하는 도시의 모습이 곧 현재와 미래 한국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으며, 세계화와 개방화에 따른 국가차원과 별도의 도시간 국내외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도시를 보는 틀이 변화되어야 함

□ 사회자본(social capital) 형성의 기반으로 도시가 중요해지고 있음

- 사회자본은 일정한 사회구조의 측면과 사회적 구조에 속한 개인들이 일정한 행동양식을 일으키는 요소(Coleman,), 혹은 협동적 행위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신뢰·규범·네트워크이다.(Putman,)
- 혹은 그룹과 조직에서 공통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도록 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며,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한 집단의 회원들 사이에 공유된 일단의 비공식적인 가치 또는 규범 내지는 신뢰의 존재이다.(Fukuyama,)
- 사회자본은 국가나 도시의 건전한 생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의 결집에도 중요한 기여를 한다. 도시는 사회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사회자본이 발전될 수 있는 공간적 배경을 제공하는 곳

□ 도시가 지속가능한 국가성장을 주도할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

- 도시를 국가발전전략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세계적 경향이며, 도시의 브랜드가 국가브랜드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도시화율이 90% 이상이 되는 시대임을 감안하면 도시의 발전패턴이 국가발전을 결정하게 됨

II. 도시단위 사업의 필요성

- ‘특화도시’로의 발전은 현 시점에서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도시학자 사센(Sasen S.)은 글로벌도시의 경쟁력은 전문화된 차이, 즉 도시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화의 장점을 최대화하면서 그 차이를 이용하는 데 있다고 주장함.
 - 도시의 특화된 전문성은 도시 내부의 경제적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시 간 경쟁을 이끄는 동시에 전문성을 통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가능하게 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도시의 입지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됨

- 그러나, 획일적인 도시발전모델로 인해 도시별 특화발전이 미흡
 - 중앙정부의 정책지향에 따른 일률적인 도시발전 전략의 추진은 각 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시설과 프로그램의 개발로 이어져 지역의 정체성 형성이 취약하게 됨
 - 대부분의 도시가 물리적 시설 중심의 도시개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도시의 역사·문화·환경적 속성이 약화되고 전국 각지에 개성 없는 비슷비슷한 도시가 만들어 지고 있음
 - 또한 기존의 지원정책들의 많은 경우, 지원기관의 성격에 따라 산업이나 장르별 특성을 기준으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 경우, 해당 지원산업에 대한 집중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도시 각 분야별 성장의 격차 발생과 산업 간 종합적 방향성 부재 등의 한계를 지님

- 따라서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시단위 발전을 계획한다면, 도시의 각 요소들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도시생태계 구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보다 다층적인 관점의 도시 단위 지원 사업이 요구됨
 - 도시별 특수성에 기반을 둔 도시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함
 - 또한 도시 단위 지원사업은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연계가 가능해 국가단위 정책방향의 실제적인 지역과의 연관성과 통합성을 높일 수 있음

제 3절 지식재산도시의 필요성 및 개념

I. 지식재산도시의 필요성

-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의 경쟁우위확보를 위한 지역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정책개발을 통한 지역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지역 단위 지식재산 지정 사업을 통해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별 IP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지식재산도시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전략적 지식재산 창출·활용 정책 모델로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지식재산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의 지식재산 시책을 활성화 하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

II. 지식재산도시의 개념

- 지식재산 활동 주체들이 효과적으로 지식재산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친지식재산적 환경(분위기)을 구축(건설)하고 있는 도시를 말함. 친지식재산적 환경이라 함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동-재투자가 선순환 할 수 있는 여건을 의미함(배상철, 2009).
- 지식재산도시란 지식재산 기반하에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도시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11년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계획안)
 - 지식재산도시 수립은 지식재산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 위의 개념을 정리하면, 지식재산도시는 도시 스스로 지식재산의 지속적인 창출·공유·활용을 고무시키고 이러한 지식재산 기반 하에 지역내 고용 및 부를 창출하는 도시를 의미함

- 본 연구에서 「지식재산도시」의 정책적 개념은,
 - 특허청의 지원·협력 하에 지식도시化 계획·수립 및 이를 바탕으로 지역內 지식재산 환경/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당도시가 IP 인프라를 갖추고 지식재산이 도시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로, 특허청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은 도시”임

제3장

해외 지역지식재산정책 및 도시지정사업 사례

제 3장. 해외 지역지식재산정책 및 도시지정사업 사례

제 1절 중국

I. 중국의 지역지식재산 정책

- 중국 국가지식산업국(SIPO)은 각 지역 지식산업국이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 「전국 지역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업무 요점(2014年全国地方知识产权战略实施工作要点)」을 발표
 - 지역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업무 능력 강화
 - (중앙) 지역 지식산업국의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전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역) 각 지식산업국은 전략 실시 진행 결과를 SIPO에 보고하고,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약 부분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하여 향후 지식재산 전략실시 업무 계획을 작성해야 함
 - 지역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기초 업무 분류 모델의 구축
 - (중앙) 구역 지식산업국의 전략 실시 업무를 해당 지역에 최적화하여 실시하기 위해, 중앙 정부는 기초 업무 분류 모델을 구축하고, 각 지역 지식산업국에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지역) 중앙의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업무 분류 모델에 따라, 구역 지식산업국에 균형적으로 업무를 배치하고, 구역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구역 지식재산권 정책 연구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

- (중앙) 구역의 산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수요를 파악하여 구역 지식재산권 정책과 구역 발전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이 구역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정리, 분석하도록 지도함
 - (지역) 구역 지식재산권 정책 연구의 미래 예측성 및 실제 적용 능력을 강화하여, 지역 산업 정책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구역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업무 능력의 지속적인 강화
- (중앙) 각 업무 부처가 협력하여 구역 지식재산 전략실시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지식재산 업무의 규범화, 체계화, 제도화를 추진함
 - (지역) 적극적으로 각 구역의 잠재력을 발산하고, 지역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시범 사업이 하위 행정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 투입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
- 중국의 국가지식재산권국(SIPO)은 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시범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 지식재산의 부흥을 꾀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군민 융합 시범지역, '18년 8월)
- * 시범기간은 2018년 8월부터 3년으로 함
 - 지식재산권 군민 융합 시범사업은 지식재산권 군민 양방향 전환 활용과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의 군대와 지역의 조직관리시스템, 업무운행시스템, 정책제도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군대와 지역간 상호 이익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자원·인재 공유를 추진
 - 군대와 민간의 신기술, 신상품, 신경영방식의 융합을 통해 국방 건설과 경제 발전을 촉진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전략추진프로젝트 시범도시, '17년 7월)
- * 시범도시 운영기간은 2017년~2020년
 - (특허유도산업 및 기업 발전업무 체제 수립) 특허유도산업 및 기업 발전업무 체제의 수립을 통해 산업 운영정책 결정에 대한 특허정보의 인도기능을 발휘하고 산업 경쟁시장에서 특허제도의 통제기능을 제고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고품질·저비용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제공함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운영능력 제고) 시범도시 내의 국유기업(또는 비영리기관)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이전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담보융자, 실시 허가 등의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가치 실현 채널을 확대함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능력 강화) 중소기업 신속 권리보호 지원체제를 수립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특허권 분쟁 신속 중재 체제를 수립하여 적시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함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관리수준 향상)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위탁관리업무를 실시하여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권 위탁관리서비스를 제공함
 -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최적화) 현존하는 서비스자원을 취합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형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가 지식재산권 운영 공공서비스 플랫폼 체계와 융합 발전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전 방위적인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식재산권 특파원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인재 양성 강화) 중소기업의 경영관리자 및 전문 기술 R&D 인력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지식재산권 교육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 수요에 맞추어 산업별·분야별 지식재산권 실무교육을 실시함
-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및 특허보험 시범지역, '16년 8월)
- SIPO가 제정한 업무방안에 따라 특허권 담보융자 및 특허보험 시점·시범업무를 실시
 - (선정요건) 시범지역은 다음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이미 담보융자 혹은 보험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인 지역
 - 관련 서비스 체제 및 시행 업무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
 - 성 시범업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업무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지역
 - 담보융자금액, 특허보험 보장금액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기 위해 노력 가능한 지역

II. 중국의 국가지식재산권 시범도시

□ (추진배경)

- 도시, 단지, 기업단위와 산업단위에 지적재산권업무체계를 수립하고, 지적재산제도를 운영하도록 촉진하여 경제와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사회와 경제의 전면적이고 협조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

□ (추진경과)

- 현재까지 5차례의 발표를 통해 총 70개의 국가지식재산권 시범도시를 선정

〈표 1〉 중국 지식재산 시점·시범도시 추진경과

(‘19년 1월 기준)

| 구분 | 선정 시기 | 시범도시 |
|-----|---------|--|
| 제1차 | ’12년 4월 | 우한, 광저우, 선전, 청두, 항저우, 지난, 칭다오, 하얼빈, 난징, 다롄, 시안, 창샤, 쑤저우, 난통, 전장, 정저우, 뤼양, 동잉, 옌타이, 푸저우, 취안저우, 원저우, 우후 등 23개 도시 |
| 제2차 | ’13년 8월 | 샤먼, 닝보, 장춘, 둥관, 우시, 주저우, 타이저우, 웨이팡, 즈보, 허페이, 자싱, 난양, 후저우, 창지, 구이양, 창수, 쿤산 등 18개 도시 |
| 제3차 | ’15년 3월 | 창저우, 안양, 상탄, 판즈화, 포산, 중산, 베이징시 차오양구, 난창, 장인, 단양, 장자강 등 12개 도시 |
| 제4차 | ’16년 5월 | 몐양, 후이저우, 더양, 베이징시 하이톈구, 상하이시 민항구, 톈진시 시창구, 충칭시 장베이구, 지모, 하이먼, 닝궈, 이우 등 11개 도시 |
| 제5차 | ’18년 5월 | 안후이성 마안산시, 광둥성 산터우시, 허베이성 스자좡시, 쓰촨성 쉬저우시, 충칭시 주룽포구, 라오닝성 선양시 6개 도시 |

- (신청자격) 시점·시범도시 신청의 범위는 조건에 부합하는 각 성 자치구의 도시

〈표 2〉 중국 지식재산 시점·시범도시 신청 기본요건

(‘19년 1월 기준)

| 시점도시 | 시범도시 |
|--|---|
| ① 시정부는 지적재산권업무를 중시하며 그를 중요한 업무일정에 삽입할 것 ② 건설한 지적재산권업무체제와 일정한 수의 지적재산관리인원 보유할 것 ③ 年 특허출원건수가 1,000건 이상 또는 해당 성(省)의 年 특허출원건수의 1/50이상을 점할 것, 또는 본 성과 동급의 도시(이미 시점도시의 기준을 획득한 도시는 제외)로 특허출원건수 순위가 1/2안에 속할 것 ④ 지식재산권업무가 비교적 독특한 지역특징과 발전 잠재력이 있을 것 | ① 최소 2년이 경과한 시점도시일 것 ② 지적재산관리체제가 현저하게 강화되어 지적재산관리체제가 구(区)와 현(县) 정부까지 구축되었을 것 ③ 年 특허출원건수의 증가율이 전국 시점도시 중 앞 1/3에 속할 것 ④ 발명특허출원건수가 전체 특허출원건수 중 점유율이 전국 시점도시 중 앞 1/3에 속할 것 ⑤ 해외특허출원이 전체 특허출원건수 중 점유율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현저하게 높을 것 ⑥ 행정집행이 주동적이고 효과가 현저하며, 특허분쟁 사건의 연 종결율이 95%초과(95%포함)할 것 ⑦ 지식재산권의 주요한 프로젝트가 본 도시의 경제발전, 과학기술진보 또는 간부(干部)의 업적평가체계를 포함할 것 ⑧ 지식재산권업무가 최소한 특정된 방면에 특히 우수하여 동급 도시에 시범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 |

□ (선정절차)

- 도시 지식재산권업무의 신청은 반드시 시정부가 국가지식산업국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점시범도시업무 초안을 제출함.
 - 해당 신청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성급의 지식산업국은 추천서 제출함.
- 국가지식산업국은 그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성(省)급의 지식산업국에 협조를 요하여 시점·시범도시의 기본조건과 평가 도시가 제출해야 하는 관련 자료에 근거해 관련 인원을 조직하여 신청도시에 대해 필요한 평가를 함.
 - 국가지식산업국은 매년(每年) 시점도시 평가를 몇 차례 나누어 평가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도시에 대해 시점도시로 비준함.
 - 국가지식산업국은 매년(每年)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 도시 중에서 우수 도시 5개 정도를 선발하여 시범도시로 비준함.
- 국가지식산업국은 평가대상 도시에 대해 비준 여부를 최종 결정함.
 - 비준을 받은 도시는 국가지식산업국이 “국가지식재산권시점도시” 혹은 “국가지식재산권시범도시”의 명패(증서)를 전달함

□ (선정기준)

- 시정부의 지재권프로젝트의 정기연구, 배치, 심사의 상황
- 특허출원이나 등록권리건수가 시점도시 이전의 증가폭 상황이나 해당 성이나 지역의 동급(시점도시가 아닌) 시범도시와 비교했을 때의 증가폭 상황
- 강화된 지적재산관리체제구축의 상황
- 지적재산권 법규제정 수준 제고의 상황
- 지적재산 중개서비스기관 완비의 상황
- 시정부의 지적재산권 프로젝트에 대한 조건, 금융자금 지지력 증가의 상황
- 지적재산보호를 위한 건실한 협력 메커니즘의 상황
- 지적재산관리체제 행정집행의 상황
- 지적재산 주요지표상 시장경제발전, 과학기술진보와 간부의 업적평가체계의 상황
- 시정부가 해당 시의 지식재산권 시점업무의 결의와 요구 등 관련 내용을 유효적으로 집행한 상황
- 시정부가 국가지식재산권국의 관련 문서의 취지를 관철 집행한 상황.

□ (지원기간) 시점도시의 지원기간은 2년, 시범도시는 무기한

- (시점도시) 2년마다 재신청·심사, 국가지적재산국의 비준을 얻은 후 새로운 기간 동안 시점도시 재지정
- (시범도시) 지원기간은 무기한이나 매 2년마다 시범도시에 대해 1회의 심사를 진행, 불합격 시 시범도시 취소

□ (추진체계) 해당 비준도시의 장(長)을 최고책임자로 하고 관련 부처 담당자를 실무자로 한 추진기구를 구성

- 추진기구의 구성원 명단은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보고

□ (요구사항) 시점·시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총체적인 업무목표 수행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정부의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으나 심사나 평가 때에는 이 중 선택하여 규정한 내용에만 포함하면 됨

** 정부의 요구사항은 매년 정부시책에 따라 변동됨

○ (지식재산관리체계의 구축) 시점·시범도시의 시정부는 지식재산프로젝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건설한 지식재산관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건설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사무의 협조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 지식재산 관리와 행정집행력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와 과학발전을 가속화하는데 유리한 지식재산프로젝트조직체계와 총괄 협조 메커니즘을 형성하여 해당 도시의 지식재산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

- 지식재산관리체제는 지식재산서비스체제를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해당 도시의 지식재산사회서비스수준의 제고를 촉진

○ (지식재산 정책 법규 제정) 해당 도시의 지식재산관리와 보호를 강화하는데 있어 충분한 정책법규에 근거하여 제공

- 시점·시범도시의 도시의 인민대표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규 즉, 시정부규정이나 부처규정 등과 같은 각 계층의 법규를 정책법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연구 제정해야 함

- 이러한 정책 법규 제공은 지적재산영역의 제도 구축과 혁신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 (지식재산의 지식과 의식에 대한 보급과 제고) 광고뿐만 아니라 인재육성과 간부선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적재산에 대한 지식과 의식의 보급에 대해 전략을 수립

- 지식재산업무 수준과 단계의 기초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조치를 취해 광고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절실

- 매체에 광고를 하는 것 외에 인재육성과 간부선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적재산에 대한 지식과 의식의 보급에 대해 전략을 다해야 함

- 예를 들면 해당 지역의 대학교육과정에 지적재산의 내용을 첨가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연구(研究) 활동을 하게하여 지식재산의 지식수준을 높임

○ (지식재산 창출력의 제고) 국내외 특허출원을 장려하여 자주적으로 지식재산의 건수

나 질의 제고를 촉진

- 특히 지적재산의 질에 대해 중요시하여 중요한 기술항목의 지적재산에 대한 출원과 보호를 지원해야 함
- 항목출원, 연구개발, 감정, 제품인정에서 지식재산정책의 방향을 확립

○ (지식재산 보호정도의 강화) 적시에 지재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하고, 지식재산행위에 대한 위조나 사칭에 대해 마찬가지로 적시에 조사·처리

- 지식재산관리부처는 공안, 공업과 상업, 출판, 세관, 검역 등의 부처 및 사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을 통해 법집행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연합으로 이러한 법집행행위를 확대
- 이처럼 지적재산관리부처간 지역을 뛰어넘는 법집행 협조를 강화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질서를 바로잡거나 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또한 지적재산의 중대한 사건이나 전형적인 사건에 대한 보호제도와 그 지역 지적재산 보호 상황을 공포하는 제도를 실시

○ (지식재산 실시 효과의 제고)

-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를 장기간 발전시키는데 유리하거나 시장전망을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의 실시를 적극적으로 추진
- 그 중에서도 특히 자체적으로 지적재산을 가지고 있는 기술에 적극 지원

〈표 3〉 중국정부의 지식재산 시점·시범도시 요구사항

| 년도 | 주요 내용 |
|-----|---|
| 13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식재산권 시범도시에 선정된 지역들은 「국가지식재산권 시범도시 관리를 완성하기 위한 통지(关于进一步完善国家知识产权试点示范城市管理的通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제도 구축) 성·시를 구성하는 부성급(副省级), 지급(地级), 현급(县级) 도시를 구분하여 지식재산 평가 지표를 구성하고 각 지역단위에 적합한 지식재산권 전략을 추진함 - (책임 귀속의 명확화) 지식재산권 시범도시가 아닌 성이나 자치구 등에 관한 책임은 각 지역 지식재산국에 귀속되나, 지식재산권 시범도시에 관한 책임은 SIPO에 귀속됨. 또한 SIPO는 지식재산권 시범도시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 - (평가 강화) 연간 업무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년 지식재산권 시범도시에 관한 관리·평가를 진행함 - (업무 연계 강화) SIPO에서 발표하는 주요 공문들을 각 지역에 모두 전달하여 각 지역에서 |

| 년도 | 주요 내용 |
|-----|--|
| | <p>시행하도록 하며, 지역 지식산업국이 시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본을 즉시 SIPO에 전달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교류 강화) 각 지역 간 정보 교류 제도를 구축하여 시범도시 업무에 관한 경험을 교류함 - (전문가 지원)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고 인재를 선발하여,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능력을 강화함 |
| 16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3월 14일, 중국 국가지식산업국(SIPO)은 「2016년 국가지식재산권 시범지역 시범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16年国家知识产权试点示范园区相关工作的通知)」를 발표 • 지식재산권 업무 기초 수립, 산업별 지식재산권 업무 강화, 규범에 따른 시범지역·시범업무 관리 등을 목표로 아래의 세부계획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정책체계 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정책 및 과학기술·무역·산업 등 관련 정책과의 융합 추진 • 특히 지원정책 수립 • 실정에 맞는 지식재산권 금융 등 서비스업 촉진 정책 시행 - 지식재산권 업무체계 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무역시범구·전면혁신개혁시범구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범업무 개혁 실시 • 정부·업계·기업의 '삼자연동, 상호보완(三方联动, 互补互促)' 업무체계 마련 • 지식재산권 관리기구·관리인원·사업비용의 전문화 추진 • 지식재산권 문화 건설 • 홍보활동 확대를 통해 '지식존중, 혁신숭상, 준법성실(尊重知识, 崇尚创新, 诚信守法)'의 문화 확산 - 지식재산권 서비스 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서비스 플랫폼 건설 • 특허신청 자문, 정보 검색, 권익보호 등 기초서비스 제공 • 서비스기구의 연합 추진 및 고급인재 도입 - 산업 지식재산권 연맹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기업·과학연구기관·서비스기구 등이 주체가 되는 산업 지식재산연맹 조직 • 연맹은 산업별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 등을 주관하여 산업 전체의 영향력 확대 - 지식재산권 운영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운영 전문기구 육성 • 창업투자자금 조성 등 자본 투입 장려 • 서비스 운영 플랫폼·기구·자본·항목의 '사위일체' 운영 체계 구축 - 시범지역 업무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국가지식산업국 시범지역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13年国家知识产 |

| 년도 | 주요 내용 |
|-----|--|
| | <p>权试点示范园区相关工作的通知」에 따라 시범지역의 업무 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운영된 시범지역에 한해서 재심사 실시 • 각 성 지식산업국은 시범지역의 시범업무 교육 시행 |
| 18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PO는 ‘2018년 국가지식재산권 시범도시 사업계획(2018年国家知识产权示范城市工作计划)’을 발표하여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계획’ 등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 시범도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며, 시범도시 사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계획을 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품질 전면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목표) 특허품질 제고 프로젝트를 심화 실시하고, 기업·고등교육기관·과학연구기관에 높은 가치의 특허 양성센터를 설립하며, 혁신주체의 발명 창출과 특허 출원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함 • (업무조치) 지식재산권 운영센터를 설립하고 고품질 특허 등록을 실시하며, 시(市)·현(縣)급 특허 지원 장려정책을 완비하고, 대리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목표) ‘엄격한 특허 보호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실천하고 지식재산권의 엄격하고 신속하며 동등한 보호 업무체제를 수립하며, 집행 및 권리보호 지원업무수준을 강화하여 보호효과를 제고함 • (업무조치) 전자상거래, 대형 전시회, 수출입 절차의 지식재산권 집행 및 권리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지식재산권 보호 특별행동을 실시함 -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체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목표) 지식재산권의 배치·인큐베이팅·거래 등 과정을 연계하고, 도시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체계를 설립하며, 도시 지식재산권 운영 관련 기금을 조성하고, 중점 산업의 지식재산권 운영과 산업화를 추진함 • (업무조치) 행정구역 내의 운영서비스기구 지원과 국가지식재산권 운영 공공서비스 플랫폼 운영의 연계를 추진하고, 2018년 내에 특허 운영업무를 완성하며, 특허운영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를 조성함 - 지식재산권 금융 서비스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목표) 대출, 보험, 재정 위험 보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허권 담보용자 서비스모델을 보급하고, 지식재산권 담보용자 위험 분담 및 보상체제를 수립하며, 특허 보험의 보급을 확대함 • (업무조치) 특허 담보용자 위험 보상기금을 설립하고, 2018년도 특허권 담보용자금액을 전년 대비 20% 이상, 특허보험에 가입한 기업 수 전년대비 30% 이상을 달성함 |

□ (지원규모)

- 지재권관련 국가 중요행사를 관련 도시에서 개최하거나 진행하는데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 시범도시나 시점도시로 선정되면 해당 도시 공무원의 업적으로 평가 받음

□ (사업평가) 시범도시 평정 업무는 부성급(副省級), 현급(縣級) 등 행정체계에 따라 시범도시들을 분류하여 실시

- (기본 평정 지표) 당국은 우선 (1) 정부 업무 수행 현황, (2) 지식재산권 창출 성과, (3) 지식재산권 활용 성과, (4)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 (5) 지식재산환경의 5개 평정 지표에 대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정을 실시함
- (추가 평정 지표) 지식재산 기관·제도의 건전성에 대해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평정을 실시함

□ (시사점)

- 단계별 지정방식을 취하고 있음
 - 시점도시와 시범도시를 구분하여 시점도시로 비준을 받은 도시가 스스로 수준을 향상하여 시범도시로 전환(Shift)할 수 있는 운영방식
 - 시범도시의 조건으로 최소한 2년이 경과된 시점도시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 지역별 특색이 드러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함
 - 시범도시 신청자격으로 “지식재산권업무가 비교적 독특한 지역특징과 발전 잠재력이 있을 것”이 포함되어 있음

제 2절 ▶ 일본

I. 일본의 지역지식재산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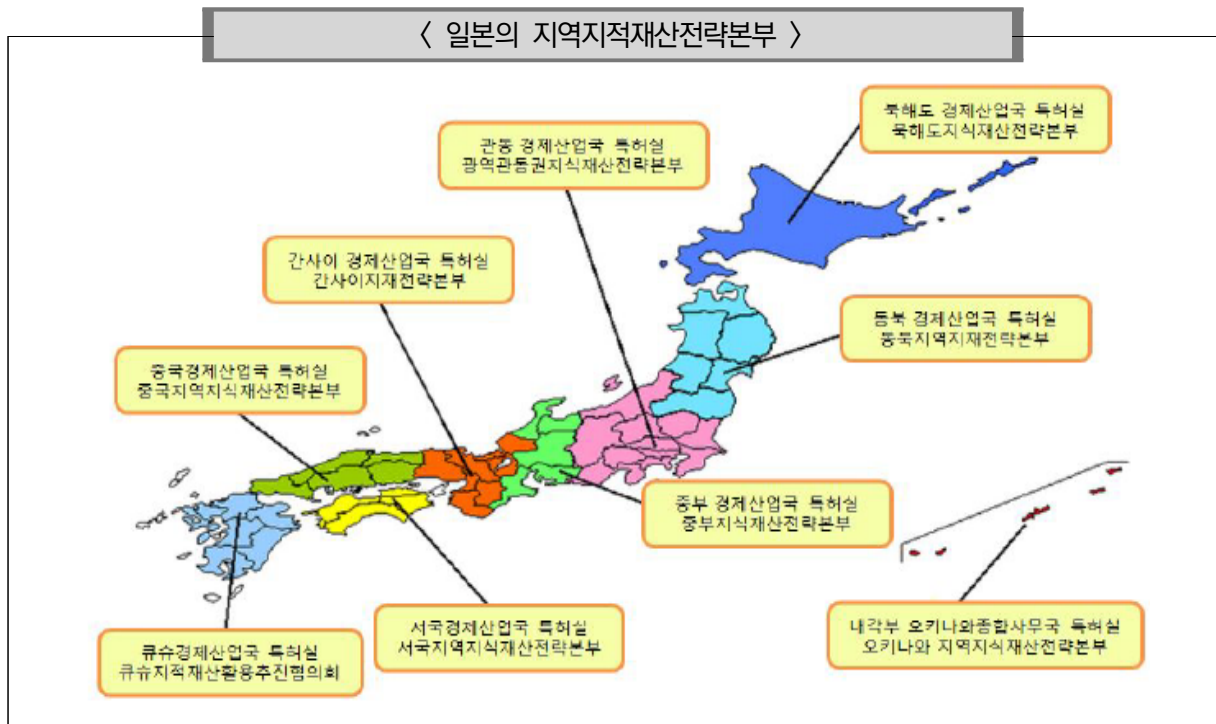
- 2016년 9월 26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 지적재산 활성화 행동계획(地域知財活性化行動計画)」을 수립하고 이를 발표함
 - (배경) 동 행동계획은 「지적재산 추진계획 2016(知的財産推進計画2016)」의 세부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지역·중소기업·농림수산분야에서의 지식재산 전략 추진’과 「일본 재흥전략 2016(日本再興戦略2016)」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전략 강화’를 목표로 한 것에 기반하여 수립됨
 - (목적) 동 행동계획은 지식재산의 취득·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 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일본의 성장력 향상 및 지역 창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행동계획은 다음의 내용을 기본 방침으로 제시하고 있음
 - (지속적인 지역·중소기업 지원 실시)
 - 전국 수준에서 JPO와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및 지원 시책의 보급·계발, 정보 제공, 각종 상담 등 기초적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 (지역·중소기업 지원 체제 구축)
 - 지역 수준에서 중소기업청과의 연계 하에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설치된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知財総合支援窓口) 및 기타 모든 지식재산 관련 지원거점을 중심으로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지원
 - 변리사, 변호사, 일본지식재산협회(日本知的財産協会) 등 관련 전문가 및 기관의 지식·자원을 총동원하며, 상공회의소, 상공회 지역 금융기관, 일본무역진흥회(JETRO) 등과 긴밀한 연계를 도모
 - (핵심성과지표 설정 및 PDCA 사이클 확립)
 - 중앙 차원에서는 핵심성과지표(KPI)1)를 의욕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차원에서

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 등에 따라 KPI를 설정하여 범용적인 지식재산 서비스의 실현을 도모

- PDCA 사이클을 통해 각 지역의 선진적인 대처 사례 등 뛰어난 노하우를 전국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

○ 일본은 9개 지역에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를 설치하여 지역지식재산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지적재산추진계획 2004’에 따라 지역지식재산 활동을 촉진하고 전략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 일본 9개 지역에 설치



○ 각 지역별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知的財産戦略推進計画)을 발표

〈 홋카이도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2018-2021) (예시) 〉

- 제1장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관리의 확립과 지적재산 활용 촉진
- 제2장 기업의 해외 전개에 대응한 지적재산권 보호
- 제3장 지적자산을 활용한 브랜드 창출 지원
- 제4장 인재 육성 및 지적재산권 학습 지원 추진
- 제5장 추진체제의 충실 강화

- <지역중소기업지적재산지원력강화사업(地域中小企業知的財産支援力強化事業)>, '15년
 - 일본 내 각 경제산업국 및 내각부 오키나와 종합 사무국의 지적재산실에서는 지역의 지적재산 지원 체제의 구축 또는 제휴 강화를 통한 지적재산 지원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선도적·선진적 지적재화의 대처를 지원
 - 또한, 해당 사업은 의욕이 높은 지역에 대해 선도적·선진적인 대응을 반주형(伴走型) 지원 등을 통해, 지적재산을 활용한 지역재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5년-2019년까지 5년간 사업이 진행되며, 이후 최종적으로 보급촉진을 통해 우수사례를 타 지역에 20건(5년간)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각 지역 경제산업국의 선발을 통해 2015년 15건, 2016년 26건, 2017년 24건, 2018년 28건을 지원함.

<표 4> 일본 지역중소기업 지적재산지원 강화사업(대표사례)

| 사업명(지역) | 사업개요 |
|---|--|
| 홋카이도산 술의 유럽브랜딩을 위한 「디자인력 강화」 사업 (홋카이도국) | 홋카이도산 일본주의 토탈 디자인력을 강화해, 디자인 기획, 상품개발, 유럽 고급 테이스트의 디자인 개발 노하우 수집 및 해외 상담회(디자인 매칭)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웹 사이트, 세미나 등에 의해 일반 공개하고, 홋카이도 지역의 디자인력 향상을 도모 |
| 아키타·이와테·아오모리 기타토호쿠 3은행 3대학 연계 TLO “Netbixplus+”사업 (토호쿠국) | 북도호쿠에 있어서의 지적재산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아키타·이와테·아오모리 은행의 고객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학 보유 특허나 연구 정보를 분석, 공유해, 지점으로 올라오는 고객 요구와의 매칭을 실시 |
| 2020년 도쿄 올림픽 올림픽을 준비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활용에 의한 지역 활성화 지원 사업(칸토국) | 2020년 도쿄 올림픽 올림픽을 겨냥한 인바운드의 추진, 해외 일본의 매력의 발신에 대해서, 디자인의 관점에서 임하는 것으로, 의장, 상표 등의 지적 재산권 창출·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참가하는 중소기업, 학생의 지적 재산 의식의 향상, 지역 금융 기관의 지적 재산 지원 능력의 강화를 도모 |
| 중부지역에 있어서의 지재를 활용한 표준화 활용 촉진 지원 사업(주고쿠국) | 표준화에 대한 이해·인지를 높이는 대응과 기반 활용을 촉진하는 지원을 통해 표준화 활용을 촉진 |
| 히로시마 광역도시권의 “제조업제휴” × “크리에이터”에 의한 관광객용 신브랜드의 구축 사업 (시고쿠국) | 제조 산업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한층 더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디자인에 의한 상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히로시마의 신브랜드를 구축. 새로운 상재·판로 개척 등 차세대를 향한 변혁에 임함 |

II. 일본의 지재선진도시(知財先進都市) 지원사업

- (추진배경) 지적재산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국가와 지방단체와의 연계의 강화라는 사고 방식 하에 2008년도부터 「지적재산추진계획 2008」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지적재산 전략에의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조직을 추진하는 지자체와의 연계를 실시
-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주적인 시책의 수립·실시에 대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연계하고 그 연계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책무를 부과

〈지적재산추진계획 2008〉 내용일부

의욕적인 조직을 추진하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의욕적인 조직을 추진하는 지방공공단체로서 선정된 都道府縣 및 政令指定都市에 대해서는 「지역지적재산전략본부」와도 연계해서 국가의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넓게 지지한다. 또한 2008년도부터 농상공연계의 조직 등을 추진한 지방공공단체도 본사업의 대상에 추가한다.

- (신청자격)
 - 제안공모에 의한 모집 선정 방식이며 응모의 주체는 시(市)정(町)촌(村)로 하며, 응모 가능한 제안은 1건으로 제한함
- (선정기준) 5가지 항목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하여 지정
 - 지식재산활동의 의한 지역진흥의 효과 가능성
 -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지자체의 독자적 추진정도
 - 우수한 선도성·모델성
 - 지속적인 추진 가능성
 - 원활하고 확고한 실시방안

□ (지원기간) 2년간 지원

○ 1년차에는 권리취득과 관련한 지원을 하며, 2년차에는 사업화 위주의 지원

□ (추진체계) 각 경제산업국특허실과 기초자치단체가 連携해서 실시

○ 구체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내용에 관해서 국가로서 지원할 부분을 국가가 실시

□ (지원내용)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특허청이나 중소기업청, 농림수산성 등의 다양한 시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을 함

○ 선정된 지재선진도시의 지원내용은 다양하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음

〈표 5〉 일본 지재선진도시 지원내용(일부도시 예시)

| 지자체 | 추진내용 | 주된 지원내용 |
|---------|---|--|
| 北海道帯広市 | 「브랜드 쇼케이스」에 의한 지역브랜드의 전략적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상품패키지의 디자인 검토나 지역 상품 생산과정에서의 스토리 검토 등에서 지재전문가 파견 공동 매뉴얼이 되는 「브랜드 쇼케이스」 작성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설치 등 지원 |
| | 오비히로시에서는 낙농제품 등 개별 상품으로서는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지만 각 조직이 산재되어 있어 브랜드 힘이 분산되어 있다. 지역전체로서 강력한 브랜드화를 꾀하기 위해 지역상품패키지(의장)나 생산과정의 스토리와 등의 검토를 통해 지역상품의 브랜드화를 구축하는 수법 「브랜드 쇼케이스」(공동 manual)을 작성하고, 다른 상품에도 응용가능하도록 지역공통의 브랜드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 |
| 静岡県富士宮市 | 「니지마스(무지개송어)」 기능성 연구·가공품화에 의한 지역 브랜드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니지마스」 기능성연구성과의 제품화와 새로운 연구에 참가하는 기업·연구기관 및 가공업자에의 지적재산보호·활용에 관련된 전문가 파견 등 지원 관계기업, 농·어협관계자를 위한 지역 브랜드에 관한 세미나 개최 |
| | 후지노미야시에서는 「food valley 구상(음식을 활용한 마을만들기)」을 내걸고, 생산량 일본 제일의 「니지마스」의 기능성·가공품화 연구를 추진하는 것에 의해 건강보조식품산업, 니지마스 가공품 제조업, 니지마스 양식업의 진흥을 도모함과 함께 거듭 음식의 지역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 |

| 지자체 | 추진내용 | 주된 지원내용 |
|---------|--|---|
| 大阪府東大阪市 | 지역을 알린 고부가가치제품제조업자에의 전환 촉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재전문가를 포함한 종합지원팀을 파견하고 지재 컨설팅 등을 지원 • 지역내에 설치한 「상품화 지원시설」에 지재전문가를 배치 • 대학 등과 연계한 「감성을 움직이는 디자인」 등 연구회의 개최지원 |
| | <p>히가시오사카시에서는 「상품화 마을 추진구상」을 바탕으로 제조업자의 신기술·신제품의 개발을 촉진시켜 디자인력의 향상에 의한 매력 있는 최종상품을 만들어 내는 기업의 증가를 목표로 한다. 또한, 지적자산을 활용한 최종제품을 「상품화」 「多種다양한 제품」 「높은 기술력」의 상징으로서 「히가시오사카 브랜드 제품」을 인정하고 수요확대를 노리고 있다.</p> | |

□ (시사점)

- 부처와의 시책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지원
 - 특허청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 농림수산업청 등 지자체의 사업 내용에 따라 타 부처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짐
 - 이를 통해 사업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기획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됨
- 「지적재산기본법」을 시행하여 지식재산의 창조·보호 및 활용을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
 - 법률에 의해 지자체의 지식재산사업을 규정화함에 따라 예산 확보가 용이함
 - 지자체의 단체장이 변경되는 등 지자체의 환경 변화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제4장

국내 지역지식재산정책 및 도시지정사업 사례

제 4장. 국내 지역지식재산정책 및 도시지정사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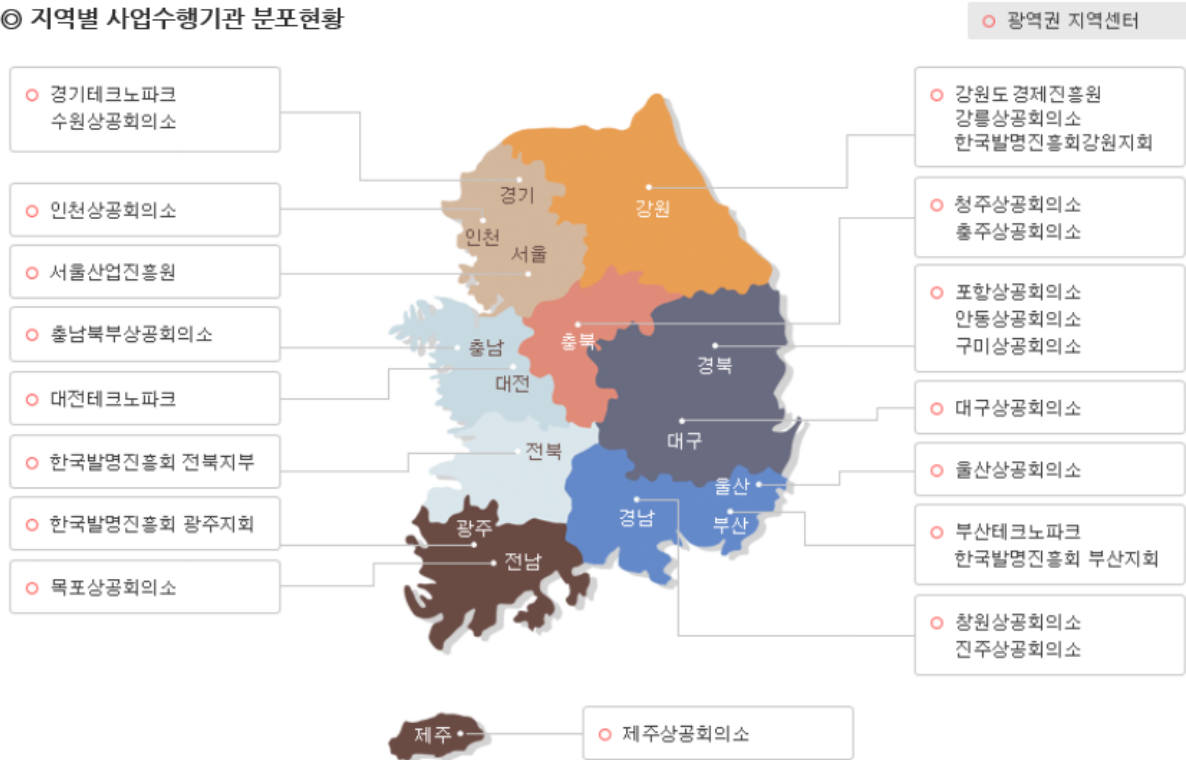
제 1절 ▶ 국내 지역지식재산 지원정책

I. 지역지식재산 지원 사업 현황

-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하여 지식재산서비스 강화를 도모
 - 전국적으로 24개('17년 기준) 지역지식재산센터(RIPC)가 운영
 - (목적) 지역의 발명풍토 조성 및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지역 내 지식재산권 창출촉진 및 적극적 활용도모, 지역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발전 도모 등 지역의 지재권 창출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 (법적근거) 발명진흥법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8장(지역의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지원),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
 - 동 센터를 통해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종합민원상담, 지식재산권 설명회, 지자체와 발명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 등을 수행

〈그림 2〉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현황

◎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분포현황



〈표 6〉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주요 사업

| 구 분 | | 주요내용 |
|------------------|------------|---|
|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 | 글로벌 IP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외 권리화,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지원 실시 |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 | |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 수시 해결 |
|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 지식재산 재능 나눔 | 지식재산 상담 및 교육, 선행조사, 브랜드 개발 등의 분야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문지식·재능을 가진 재능 기부자가 지식재산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개인, 기업을 지원 |
| | IP 경영인 대회 | IP 경영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성공 모델을 창출·확산 |
| 지식재산 창업 촉진 사업 | IP 나래 |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의 보유기술에 독점적 권리를 도출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기반 경영 기초를 설계하여 지속성장 기업이 되도록 지원 |
| | IP 디딤돌 | 국민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굴·선정하여 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 지식재산권화 하고, 창업·사업화 등으로 후속연계 지원 |
| 지식재산경영인증 |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지식재산경영 도입을 유도 |

II. 지역 지식재산 활동의 문제점

- 지식재산 활성화는 R&D, IP 전문 인력, IP 서비스 기관 등 IP 혁신 인프라가 얼마가 해당 지역에 집적되어 있느냐가 중요요인임
- 그러나 IP 서비스기관 및 인력의 대다수가 서울 및 대전 지역에 집중되는 등 지역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표 7〉 지식재산의 지역간 불균형

| 구분 | 서울 | 대전 | 경기 | 강원 | 전남 | 부산 |
|----------------------|-------|--------|-------|-------|-------|-------|
| 인구 만 명당 최근 3년 등록특허 수 | 89.10 | 141.49 | 62.19 | 23.68 | 19.56 | 24.00 |
| 특허품질(A등급 비중) | 17.5% | 17.7% | 15.4% | 11.8% | 3.8% | 6.0% |
| 특허 100건당 서비스업 종사자 수 | 26.14 | 2.65 | 1.68 | 2.67 | 2.43 | 3.29 |
| 유효특허 100건당 변리사 수 | 2.88 | 0.54 | 0.30 | 0.40 | 0.32 | 1.16 |
| 최근 5년간 특허등록 기업비중 | 1.22% | 1.36% | 1.61% | 0.59% | 0.76% | 0.61% |

출처: 2017년 지역별 지식재산 역량진단(20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이러한 지식재산역량의 지역 불균형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음

〈표 8〉 지식재산역량 상위 5개 도시 (연도별)

| 2013년 상위 5개 지역 | | 2014년 상위 5개 지역 | | 2015년 상위 5개 지역 | | 2016년 상위 5개 지역 | |
|----------------|-------|----------------|-------|----------------|-------|----------------|-------|
| 대전 | 0.592 | 대전 | 0.608 | 대전 | 0.561 | 대전 | 0.574 |
| 경기 | 0.442 | 서울 | 0.468 | 경기 | 0.447 | 경기 | 0.451 |
| 서울 | 0.429 | 경기 | 0.447 | 서울 | 0.436 | 서울 | 0.434 |
| 충남 | 0.377 | 충북 | 0.371 | 울산 | 0.361 | 충북 | 0.365 |
| 울산 | 0.356 | 충남 | 0.370 | 인천 | 0.354 | 경북 | 0.365 |

출처: 2017년 지역별 지식재산 역량진단(20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지역별로 보면, 대전은 0.574점으로 '13년 평가이후 꾸준히 1위를 기록하고 있음. 또한 경기, 서울은 각각 0.451과 0.434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위와 3위를 기록함. 충북과 경북지역의 점수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0.365점으로

공동 4위를 차지

- 대전지역의 경우 많은 공공 연구소들이 밀집해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여러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
- 경기지역의 경우 민간기업의 연구소 및 공장이 밀집해 있고, 서울지역은 많은 대기업 본사가 위치해 있는 특징이 있음

□ 또한 지자체內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부재한 상황임

- 지식재산 관련 업무는 지역경제과, 경제개발과, 기획감사실 등 지자체마다 다양한 부서에서 1~2인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담당
 - 이전 업무와 연관없는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이 낮음

〈표 9〉 지자체內 지식재산관련 업무 담당자 수

(설문조사, '09)

| 담당 인원수 | 합계 평균(%) | 광역시자체(%) | 기초지자체(%) |
|--------|----------|----------|----------|
| 1명 | 74.2 | 81.8 | 73.2 |
| 2명 | 7.5 | 18.2 | 6.1 |
| 3명 | 4.3 | 0.0 | 4.9 |
| 5명 | 2.2 | 0.0 | 2.4 |
| 기타 | 3.3 | 0.0 | 3.6 |
| 없음 | 8.6 | 0.0 | 9.8 |

출처: 지역진흥을 위한 지식재산관리 역량제고방안(200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 2절 (舊)지식재산도시 지정사업 분석

- (추진배경) 무형자산을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지식자산을 전략적으로 창출·활용하는 모델 개발로서 지식재산도시사업을 추진
 -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노력은 지식재산 일류국가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임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하는 전략적 지식재산 창출·활용 정책 모델의 하나로 지식재산도시 추진 필요
- (추진근거) 발명진흥법 제 3조(발명진흥종합시책)에 근거하여 추진
- (추진경과) 2010년 공모를 시작으로 매년 5개씩 10개의 지식재산도시를 선정하여 지역 주민/공무원 등 지재권 사업을 발굴·추진
 - 2013년 사업종료

〈표 10〉 舊지식재산도시 추진경과

| 년도 | 추진 경과 |
|-------|---|
| 2006년 | 광주광역시 남구와 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회) 지식재산도시 추진 사업계획 수립 및 MOU, 지식재산도시 선포(2~3월) |
| 2009년 | 특허청,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인증서 수여(1월) 경상북도 안동시 지식재산도시 선포(10월) |
| 2010년 | 특허청,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실시 및 5개 지자체(광주 남구, 경북 안동, 충북 제천, 강원 원주, 대구 달서구) 선정 |
| 2011년 | 특허청, '11년 지식재산도시 지자체 5개(제주, 전남 광양시, 경남 진주시, 부산 북구, 광주 광산구) 선정 |
| 2013년 |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종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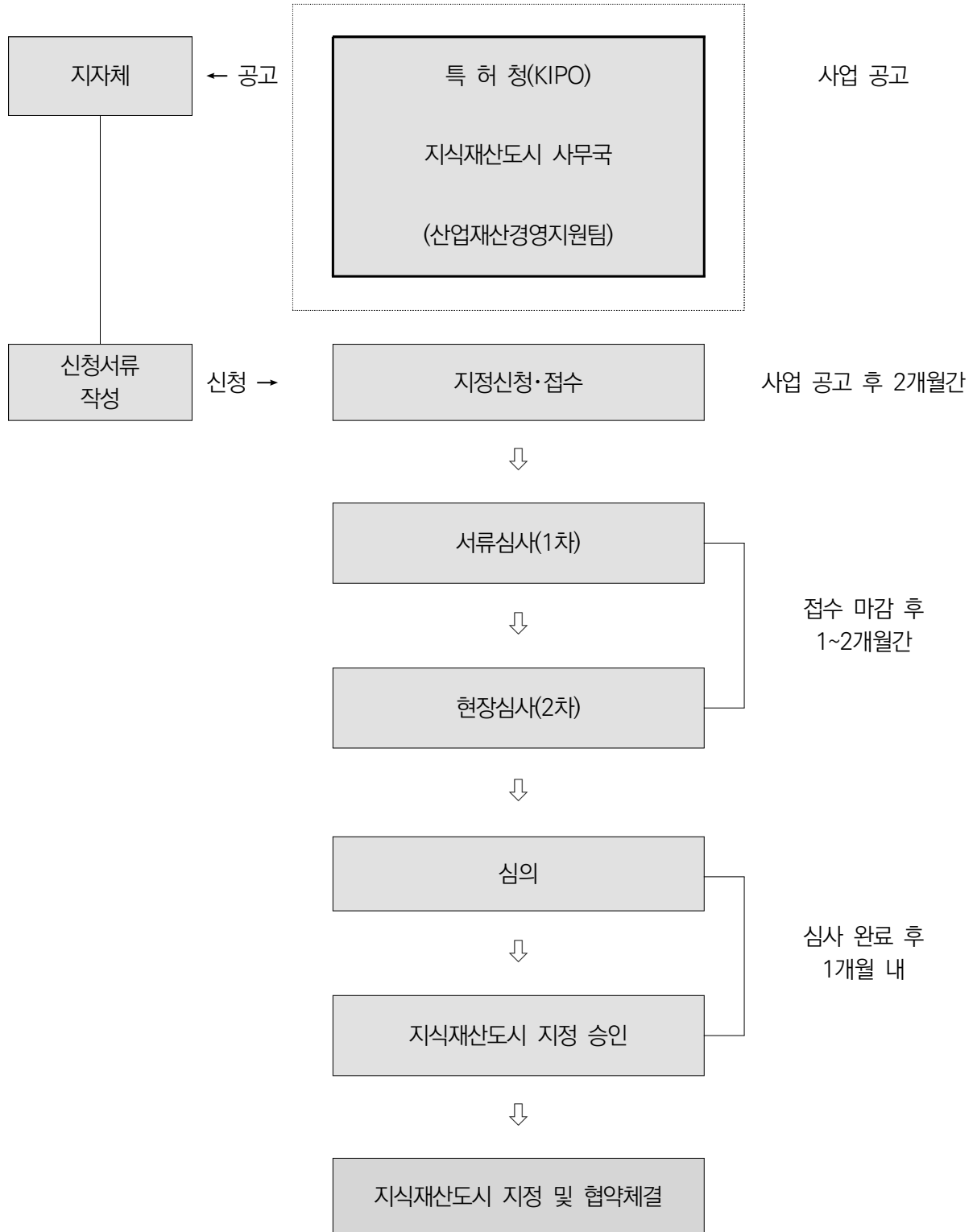
□ (신청자격)

- 지식재산도시 지정은 희망하는 전국 기초 및 광역 지자체 대상

□ (지원절차) 지식재산도시 지정은 지원서 제출 → 심사 → 예비지정 → 본지정의 과정을 경유

- 공모를 통해 지식재산도시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접수
- 신청 지자체를 시(중소도시), 군(농어촌), 구(대도시), 광역시·도(광역도시)등 도시 인구·규모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심사·평가하되, 광역지자체별로 1개 지식재산도시 선정을 원칙
 - 원칙적으로 기초지자체인 시, 군, 구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시·도는 기초지자체를 후견하는 후견인 모델로 검토
 - 산업기반이 발달된 지역뿐만 아니라 농어촌, 산업기반이 없는 대도시에도 지식재산도시를 지정하여 전국적 관심 확대
- 심사는 사무국에서 서류심사를 위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를 병행하며 그 결과를 보고
 - 현장심사는 서류심사만으로는 불분명한 부분들에 대해 명확히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 검증 절차로 활용
 - 심사결과 일정 요건 이상 수준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지자체에 대하여 지식재산도시 지정 대상으로 보고(추천)
- 사무국의 심의결과를 보고(추천)받고, 우리청 내부적으로 지식재산 도시를 최종 결정함
 - 청 내·외부 인사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무국의 보고를 받고 내부 토론 및 심의를 통해 결정

〈그림 3〉 舊지식재산도시 지원 절차



- (선정기준) 지역의 ‘지식재산 친화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여건’과 ‘결과’중심의 지표뿐만 아니라 ‘노력’과 ‘과정’을 고려
 - 산업시설 여건이 열악한 도시들을 배려하여 현 지식재산 수준(출원건수, 등록건수 등)과 노력(조례제정, 전담조직 구성, 사업발굴 등)을 함께 평가
- (평가지표) 국내 기본의 평가항목 모델을 참고하여 3대 부문, 7개 중간부문별 지표, 24개 세부 개별 항목으로 구성

〈그림 4〉 舊지식재산도시 평가지표



- 추진체계는 지식재산 인프라에 해당되는 부문으로 조례제정, 추진기구, 전담부서(인력)을 내용으로 8개 항목으로 구성

〈표 11〉 舊지식재산도시 평가지표(추진체계)

| 영역 | 평가항목 | 배점(30) |
|----------------|---|--------|
| 1. 조례 제정 및 적절성 | • 지식재산 관련 조례 제정 여부 | 5점 |
| | • 지식재산 관련 조례의 지역 지식재산활성화에 대한 적합성 | 3점 |
| 2. 추진기구 | • 지식재산 관련 추진기구(ex 팀, 위원회) 설치 유무 | 3점 |
| | • 지식재산 관련 추진기구 구성의 적절성 - 추진기구의 조직내 지위 | 3점 |
| | • 추진기구 운영 횟수 및 활동내용 | 3점 |
| 3. 전담부서 및 인력 | • 지식재산 전담부서 설치 유무 | 3점 |
| | • 지식재산 전담부서 활동내용 - 추진사업, 성과, 유관기관 협력사례 등 | 5점 |
| | • 지식재산 전담부서의 인력 및 조직규모의 적절성 - 지식재산업무 담당 행정인력(공무원)수 - 지식재산 전문 인력 유무 및 전문성 정도 - 전담부서 장의 지위 | 5점 |

○ 운영사업은 '09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향후 3년간 추진 계획에 대해 8개 항목으로 구성

〈표 12〉 舊지식재산도시 평가지표(운영사업)

| 영역 | 평가항목 | 배점(39) |
|------------------------|--|--------|
| 1. 지식재산 관련 전년도 사업추진 내용 | • 지역의 지식재산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직접 지원사업건수 및 예산 | 5 |
| | • 지식재산의 진흥 및 이해증진 관련 세미나, 포럼, 워크샵 개최, 컨퍼런스, 박람회 등 인식제고 사업건수 및 예산 | 5 |
| | • 지식재산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건수 및 예산 | 3 |
| | • 지식재산 관련 홍보건수 및 예산 | 3 |
| | • 정치적 지원 | 5 |
| | - 단체장 공약, 시정방향, 지식재산도시선언 등 - 단체장의 지식재산 관련 행사 및 회의 참석 | |
| 2. 차년도 사업추진계획 | • 비전 및 목표의 적합성 - 시정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비전 설정, 명확한 사업목표 | 3 |
| | • 추진계획의 적절성 -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이나 계획 수립 정도 및 내용의 적절성, 추진계획 일정의 적절성 | 10 |
| | • 소요자원 분담 및 자원조달 방안 | 5 |
| | - 소요예산 규모, 소요예산 조달방안의 현실성 | |

- 지식재산 현황은 지역내 개인, 법인 등 모든 발명주체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보유 현황으로 8개 항목으로 구성

〈표 13〉 舊지식재산도시 평가지표(지식재산현황)

| 영역 | 평가항목 | 배점(31) |
|--------|---|--------|
| 1. 절대치 | • 지역(지자체)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최근 5년) | 4 |
| | • 지역(지자체)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율(최근 5년) | 5 |
| | • 지역(지자체) 전체 산업재산권 등록 건수(누계) | 3 |
| | • 지역(지자체) 전체 등록인수(누계) | 3 |
| | • 지자체 직접 보유한 산업재산권 건수(누계) | 4 |
| 2. 상대치 | • 지역(지자체) 회사법인 수 대비 산업재산권 등록 건수 - 지역내 회사법인 산재권 등록건수/지역내 회사법인 수 | 4 |
| | • 지역(지자체) 회사법인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 - 지역내 산재권 보유 회사법인 수/지역내 회사법인 수 | 4 |
| | • 지역(지자체) 인구 대비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 산재권 등록 건수/인구 수 | 4 |

□ (지원규모) 지자체별로 1년 1억원씩 3년간 총 3억원 내외 지원

- 사업비는 한국발명진흥회와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집행

□ (지원내용)

- 지자체당 1억원의 지식재산도시 조성비용 지원
 - 매년 5~6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자체별로 1년 1억원씩 3년간 총 3억원 내외 지원(광역지자체는 직접 지원 없음)
 - 2년차에 중간평가를 추진하여 3년차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사업비는 한국발명진흥회와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집행
 - 지자체는 자체 사업비를 추가하여 지식재산 도시 조성 노력
 - 직접 사업비는 지자체 비용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우리청 지원 예산은 주로 전략수립에 사용하여 세부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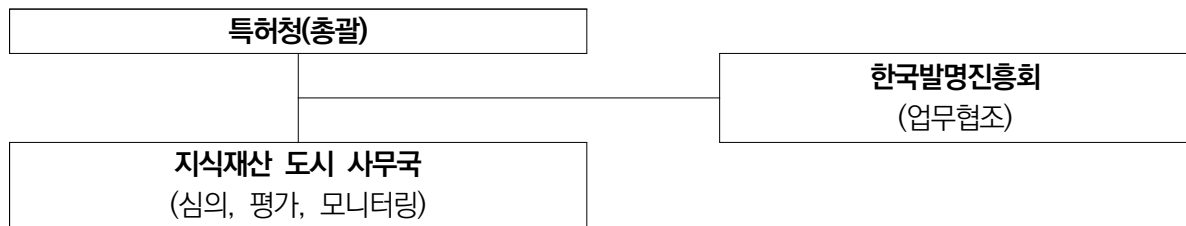
- 지역별 지재권 특화사업, 지재권 창출 운동, 전통산업 및 지역특산물 지재권 전략 수립, 각종 교육·행사·대회 등 추진
- 우리청 지재권 관련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에 우선권 부여, 매칭사업에 사업비 우선 지원
 -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우리청 사업 추진시 지식재산 도시에 대해 가점 인정
 - 지자체와 매칭을 전제로 하는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 브랜드·디자인 가치제고 사업에 대해 매칭(비) 우선 지원 고려
 - 지자체와 5:5 매칭을 통해 사업을 추진, 수요조사와 내부심사 후 매칭 대상 지자체 및 매칭비용을 결정
-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사개최 및 홍보, 우수공무원 표창, 지역센터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 발명경진대회 등 지재권 관련 행사 개최시 개최 장소로 우선 고려, 지식재산도시 지정 행사를 통한 대외 홍보 협조
 - 매년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는 발명경진대회 또는 지재권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포럼 등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발명의 날 행사 지자체 및 공무원 표창시 추천, 해외 관련 지역 및 기관 방문 등 연수 기회 제공
 - 지식재산도시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협조하여 인력 및 노하우 활용
 - 지식재산도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초기 단계부터 지역센터와 협력하여 사업 집행시 지역센터와 체계적인 협력이 가능토록 함
 -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자체의 지재권 현황을 분석하고, 지재권 창출·활용·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다양한 정책 수단이 지자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 수단 마련에 협조
- 지식재산도시간 지식재산도시 협의회 구성·운영을 지원하여 도시간 협력 및 우수사례 발표 등 기회 제공
 - 지식재산도시간 협력 및 정보공유를 위해 지식재산도시 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

는 지자체들간 협의회 구성

- 지식재산 도시로 선정된 도시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도시를 선언하고 지자체 정책방향으로 삼는 도시를 회원으로 함
- 협의회는 회원 지자체간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회원간 위원회를 통해 의장도시를 선정하여 홍보토록 지원
- 일본, 중국 등 해외 유사 도시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도시간 자매결연 등을 하여 대내외 관심 유도

- (추진체계)산업재산경영지원팀에 지식재산도시 사무국을 구성하여 지식재산도시 관련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토록 함

〈그림 5〉 舊지식재산도시 추진체계



- (담당부처)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 (시사점)

- Top-Down방식으로 인한 혁신주체 및 컨트롤 타워의 부재

- 지식재산도시 사업은 지자체에서 지역 지식재산활성화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취지였으나 실제적인 운영조직의 부재로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컨설팅 조직도 부재하여 사업의 취지가 희석화 됨

- 사업내용의 중복성, 지역의 고유 특성 부재

- 사업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음
 - 사업의 성과지표를 정량적인 지표인 특허출원건수 등을 지표화함으로써 창출지원 사업에 집중되어 있었음
 - 창출지원사업은 기존의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주요 지원사업으로 지자체의 사업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이 중복됨
- 지속가능한 사업이 아닌 단일성 사업 중심
- 일부 지역이 추진하였던 사업에 지역브랜드화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단일성 사업으로 사업이 연계되지 지속적일 가지지 못하였음
 - 지역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역특산물 및 지역생산품에 접목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의 특성이 드러나게 브랜드화 하지 못하였음
 - 단순 지역의 로고나 슬로건을 개발하고 마침
- 법적 근거 부족 (개별 근거 법률 부재)
- 지식재산도시 지정 사업은 「발명진흥법」 제3조 제2항 제4호 발명진흥 개괄조항에 근거하여 지식재산도시 지정을 추진
 - 지자체의 환경적, 정치적 변화로 인한 사업의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 한 상황에 직면함
 - 지자체장의 의지와 정치적 이슈가 사업의 존폐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됨
 - 도시지정 관련 일반적 법률이 없으므로 추후 지식재산도시 지정에 관한 개별근거 법률제정이 필요

제 3절 도시지정 특화사업 사례

I. 문화도시지정사업(문화관광부)

- (추진배경) 창의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으로서 ‘문화도시’의 가치 확산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도시 조성으로 문화균형발전 견인
 -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문화도시’에 대한 세계적 관심 지속
 -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
- (추진근거)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근거하여 문체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지정 ('14년 제정)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 (신청자격)
 - 광역 지자체(시, 도) 및 기초 지자체(시, 군, 자치구)
 - 기초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 신청(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2항)
- (지정신청분야)
 - 문화도시 기본 지정방식은 도시 고유 명칭을 바탕으로 기본분야를 설정하고 지역이

신청 및 제안하는 문화브랜드를 담아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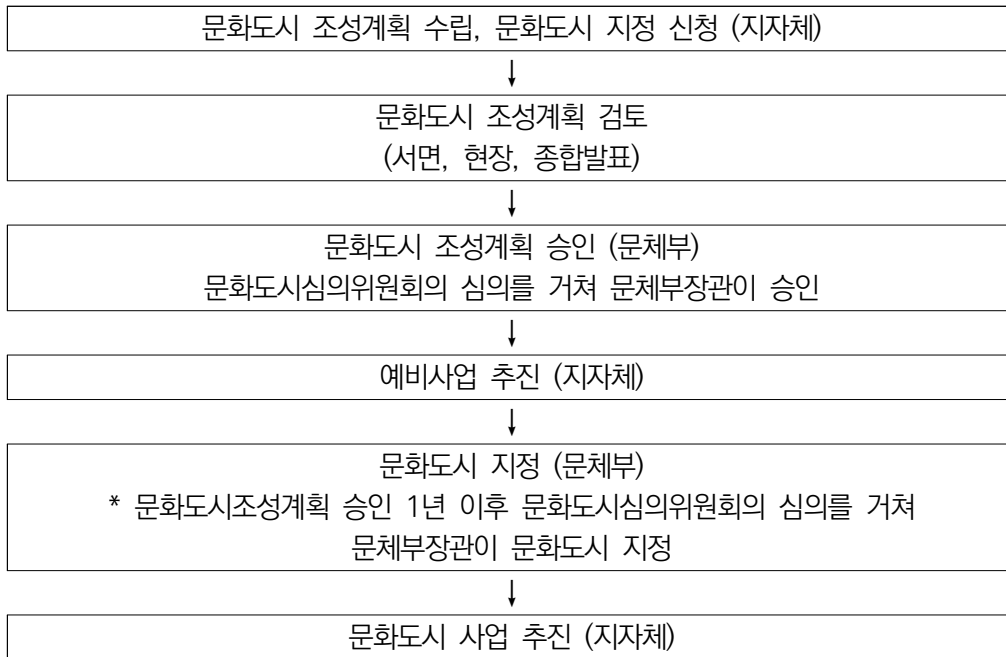
- 기본 분야는 문화 관련법을 근거로 역사전통 / 예술 / 문화산업 / 사회문화 중심형 및 지역 자율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종합 지원
 - 지역이 중심으로 추진하려는 사업 및 추진전략 등을 근거로 하여 분야를 정하고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
 - 각 지자체는 지정신청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 속하는 사업들도 복합적으로 포함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지정 분야는 지자체별 특성화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으로 운용하며, 각 분야별 지정 도시 수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음

〈표 14〉 문화도시 지정유형

| 기본 분야 | 관련법 근거 | | 세부 분야(예시) |
|----------|----------|---------------------------------------|----------------------------------|
| 역사전통 중심형 | 지역 문화진흥법 |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육성특별법 등 | 역사/전통 등 |
| 예술 중심형 | | 문화예술진흥법 등 |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건축/어문 등 |
| 문화산업 중심형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 영상/음악/게임/출판/광고/만화/대중문화예술/문화콘텐츠 등 |
| 사회문화 중심형 |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 생활문화/여가/인문/문화교육/다문화/시민문화 등 |
| 지역 자율형 | | 문화도시조성 관련법일반 | 기본분야 융·복합/생태문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

- (지정 절차) 문화도시 지정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지자체)→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문체부)→예비사업추진(지자체)→문화도시 지정의 5단계를 걸침

〈그림 6〉 문화도시 지정절차



□ (심의기준) 조성계획 검토 승인과 문화도시지정 승인이 있음

○ (조성계획 검토 승인 기준) 문화도시 지정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협의 여부(기초-광역 지자체 간) 및 법령상 포함내용을 반영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해 적격성 검토·평가

문화도시 조성계획 포함 사항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해당도시의 문화 환경 및 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운용 및 양성에 관한 사항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문화도시 지정) ▲예비사업 결과 및 준비상태 ▲문화도시 추진기반 확보 및 실현 가능성 ▲사업효과 등을 종합 심의
 - ①서면심의 → ②현장실사 → ③심의위원회 지정투표를 거쳐 지정
 - * 문화도시 지정심의 기준은 현재의 기본(안)을 바탕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심의기준을 사용함

〈표 15〉 문화도시 지정심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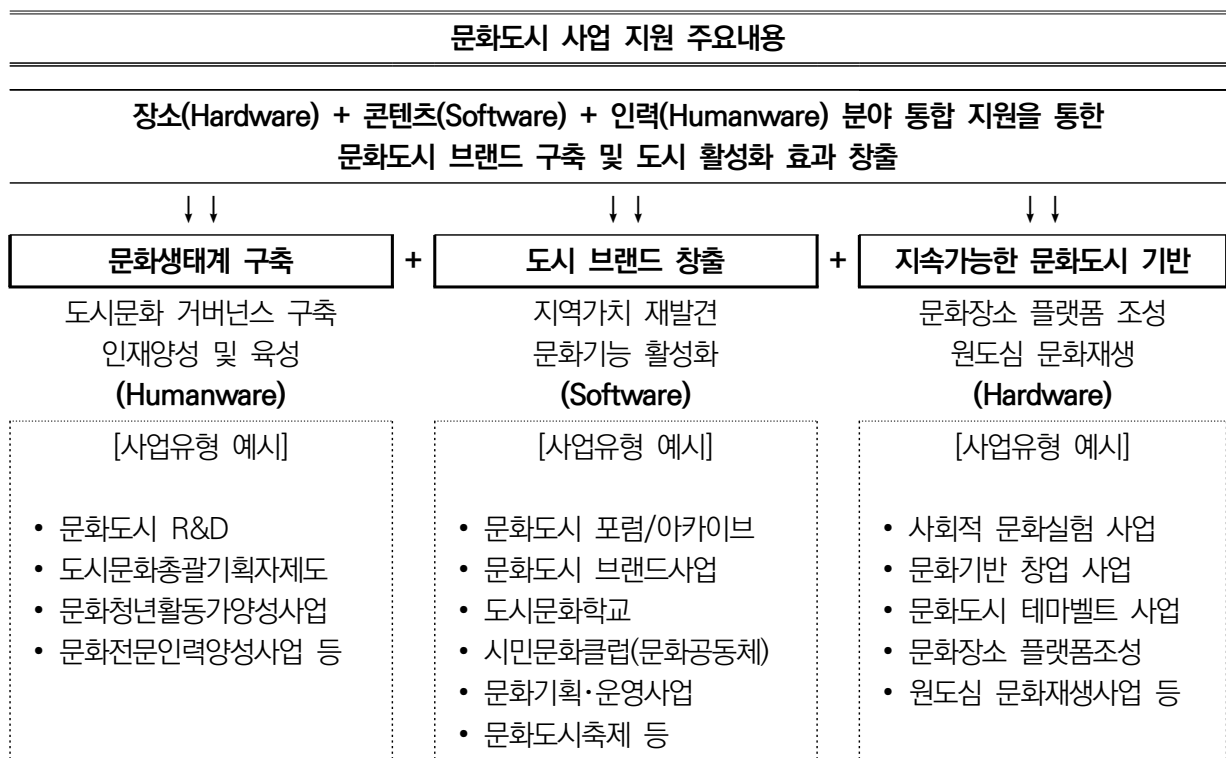
| 항목 | 세부 평가항목 |
|--------------------|--|
| 예비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 | 문화도시 비전에 따른 예비사업 설계 및 실행 |
| | 예비사업계획에서 제시된 성과목표를 실현 및 달성 정도 |
| | 예비사업 실행결과에서 도시의 문화기획·추진 역량의 확인 |
| 문화도시 추진기반 확보 |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의 확보 |
| |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의 확보 |
| |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전문 추진조직 구성 및 운용 |
| 문화도시 추진효과 및 가능성 |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참여 확대 및 촉진 가능성 |
| | 문화인들이 활동 또는 정주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문화기획자, 예술인, 청년 등) |
| | 문화도시의 가치를 통한 도시브랜드 생성 및 경영관리 능력 |
| | 문화를 통한 도시의 성장동력 생성 및 사회·경제적 효과 파급 |

- (지원규모) 각 문화도시에 5년간 최대 200억원(총사업비 기준) 이내 범위 지원 추진
 - * 총사업비는 국비 및 지방비(50%:50%)가 매칭된 사업예산 총액의 의미
 - 사업예산은 기본사업비 + 선별사업비 조합으로 총사업비 구성
 - 기본사업비(공통) : 75억원 문화경영 / 도시특화 지원 기본사업비
 - 선별사업비(차등) : 125억원 효과파급 / 하드웨어 지원 선별사업비
- (지원내용) 문화도시로서 도시 고유의 문화적 힘을 생성하는 문화가치 중심의 사회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담는 장소로서 도시기능을 활성화하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 및 지원
 - 문화도시 지정 시 수립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지자체 수립 / 문체부 승인)에 근거하

여 문화도시를 만들고 가꾸어가는 사업과정 중심으로 지원

- (문화적 장소) 기존 유휴공간을 도시의 문화적 활동이 집중되는 문화장소·허브로 재구축하고 활성화에 따라 문화클러스터로 확대
- (문화적 콘텐츠) 지역 문화가치 및 자원의 재발견·융합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프로그램(문화적 창작, 창업, 향유, 교육, 복지 등) 기획·추진
- (문화전문인력) 지역 주민·청년 대상 「교육+커뮤니티 형성+문화 프로젝트 실행 등」 통합지원을 통해 문화도시를 이끌 문화리더 양성
- (기타) 문화도시 거버넌스 운영(전문 추진조직, 공공-시민-전문가 협의체 등), 문화도시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문화도시 간 네트워크 및 협력 등

〈그림 7〉 문화도시 지원내용



□ (추진체계) 문화도시별 설치되는 문화도시센터를 중심으로 도시문화협치구조에 의한 문화거버넌스를 유지하면서 사업추진

○ 문화도시센터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문화네트워크 공유테이블’을 운영하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사업행정부서가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지원

- 도시 내에 정식협의체 구조를 조직하고 사업의 추진-지원-관리를 함께 이끌어가는 구도로 문화협치 중심의 사업추진체계를 구성

□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 (시사점)

- 개별법령에 의한 추진 근거 확보

-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근거하여 문화도시 지정을 규정화함
- 문화도시유형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문화재 보호법, 고도보존육성특별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사업진흥기본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고 있음

-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지정신청 분야 구분

-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신청시 기본분야를 지정하여 신청함
- 기본 분야는 문화 관련법을 근거로 역사전통 / 예술 / 문화산업 / 사회문화 중심형 및 지역 자율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문화도시가 사업을 유형에 맞춰 중점 추진함으로써 유사 사업으로 문화도시의 특색이 희석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예비사업-본사업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사업운영

- 문화도시 신청 후 조성계획안을 바탕으로 예비 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평가하여 문화도시를 지정
- 예비사업단계를 통해 지자체의 운영 역량을 확인하고 1년동안 예비사업을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서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본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II. 평생학습도시지정사업 (교육부)

※ 평생학습도시(개념) :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 사업

- (추진배경) 제4차 산업혁명,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역 수요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인프라 강화를 통한 주민 평생학습 기회 확대
 - 제4차 산업혁명,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으로 전 생애에 걸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 도모
 - 평생교육진흥원(시·도), 평생학습도시(시·군·구), 평생학습센터(읍·면·동)로 이어지는 지역의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혁신
 - 지역적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학습자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 (추진근거) 「평생교육법」 개정('14.1.)으로 국가-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국가평생교육 추진체제 근거 마련

〈평생교육법 제15조 (평생학습도시)〉

-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과) '99년 년도 광명시를 시작하여 '01년 전국으로 확대추진

- 160개 평생학습도시 조성 ('01~'18년)

〈표 16〉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연도별)

| 연도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계 |
|----|-----|-----|-----|-----|-----|-----|-----|-----|-----|-----|-----|-----|-----|-----|-----|-----|
| 도시 | 3 | 3 | 5 | 8 | 14 | 24 | 19 | 6 | 8 | 28 | 11 | 7 | 7 | 10 | 7 | 160 |

* 평생학습도시(누적) : ('01년) 3개 → (~'07년) 76개 → (~'15년) 136개 → (~'18년) 160개

□ (신청자격)

-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지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로서 평생학습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평생학습 추진계획이 우수한 7개 내외 지역
-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지원) '17년까지 지정된 평생학습도시 중 10개 내외 지역

〈표 17〉 평생학습도시 신청자격

| 구분 | 대상 시군구 | 신청 가능 사업 |
|-------|------------------|------------|
| 단년 지원 | 평생학습도시 未지정 시·군·구 | 평생학습도시 지정 |
| | 평생학습도시 既지정 시·군·구 |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

□ (선정기준) 시·도 예비심사(30%)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본심사(70%) 결과를 종합하여 지원대상 및 시·군·구별 지원금 확정

- (심사 방법) 시·도 예비심사(30%)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본심사(70%) 결과를 종합하여 지원대상 및 시·군·구별 지원금 확정
 - (예비심사) 구체적인 심사방식과 내용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 단 심사결과는 A~D 4개 등급으로 구분하되 A등급은 시·도별 최대 2개 시·군·구까지 부여 가능
 - (본심사)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서면평가하며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의 경우 발표·면접심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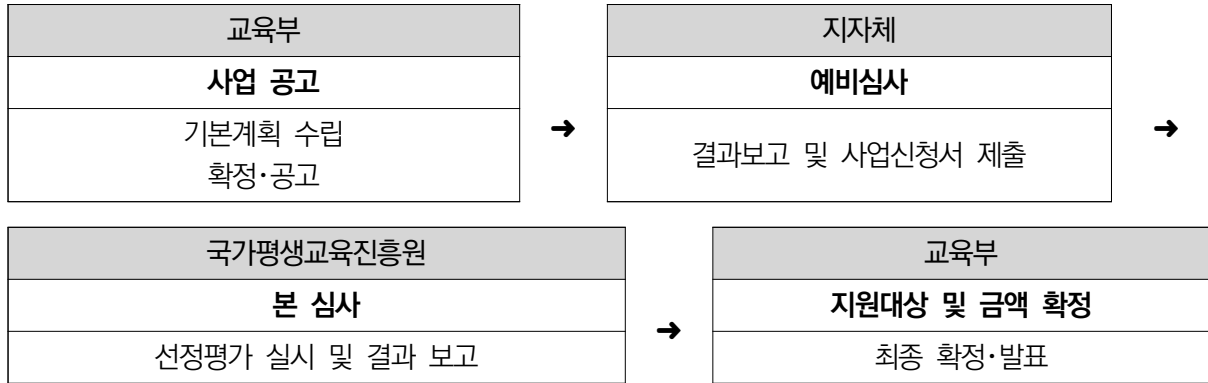
〈표 18〉 평생학습도시 주요 심사 기준

| 사업 구분 | 주요 기준 |
|------------|--|
| 평생학습도시 지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특성 분석 및 지역요구 수렴을 통한 비전과 목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 예산 등 • 사업 추진 계획 및 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 및 평생교육 환경을 고려한 사업목표 및 계획수립, 교육결과의 환류(효과) 등 ※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의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연내 운영 계획 또는 활성화(확대 등) 계획 포함 |
|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필요성, 특성화 정도 • 사업 추진 계획 및 사업 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 및 평생교육 환경을 고려한 사업목표 및 계획수립, 교육결과의 환류(효과) 등 ※ 평생교육법 제21조의2의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연내 운영 계획 또는 활성화(확대 등) 계획 포함 |

* 신청한 시·군·구 현황을 감안, 시·도별 편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안배 가능

□ (지원절차)

〈그림 8〉 평생학습도시 지원절차



□ (지원규모) 평생학습도시와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원됨. 단 지원금액의 100%이상 지방비 대응투자

〈표 19〉 평생학습도시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금액 | 지원 | 단가 |
|------------|-----|--------|-----------------|
| 평생학습도시 지정 | 630 | 7개 내외 | 시·군·구당 90백만원 내외 |
|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 500 | 10개 내외 | 시·군·구당 50백만원 내외 |

* 신청 규모,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 도시 수, 단가 조정 가능

□ (지원내용)

○ (평생학습도시 지정) 주민이 언제·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 지역의 여건 및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어촌, 고령인구 밀집지역, 다문화가정 및 저학력·저소득층 등 지역특성 반영

- 지역 내 평생교육 기반(조직, 예산, 인력 등) 조성 및 지역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지역 평생교육 진흥사업 지원

〈 평생학습도시 지정 사업 (예시) 〉

-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퇴직 중·장년, 장애인 등 학습자 여건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경제 등 자발적 학습동아리 지원
- 평생교육기관(대학 포함) 간 연계체제 구축 및 전문성 강화 연수, 평생학습 박람회 참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및 학습공간 확충 등 지역 평생교육 기반 조성 추진

○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이미 지정된 평생학습도시 대상으로 학습형 일자리 창출, 고용·복지 연계, 국가시책과 연계한 지역자원 활용 등 지역현안을 반영한 평생교육 특성화 사업 지원

* 관내 타부서와 협력·연계(사업융합) 프로그램 구성·운영 권장

- 아래 제시된 특성화 사업 유형 중 지자체 특성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고, 그 유형 해당 프로그램을 전체 프로그램의 50%이상 포함되도록 구성

〈 특성화 사업 유형 (예시) 〉

- 지역문제 해결 모형 :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 재직자 연계 모형 : 지역 내 재직자/소상공인 대상 전문성(서비스) 향상 교육 프로그램 구성
- 지역학교 연계 모형 : 지역학교(유초중고)와 연계한 학습동아리 협동조합 육성
- 지역대학 네트워크 모형 : 관내 대학과 연계, 인재 양성·수급 등 지역 공동체 활동 확산
-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제 모형 :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제 도입 및 활성화 프로그램 구성
- 지자체 자율 설정 모형 :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모델 자율 설정 가능

* (주요 고려사항) 목표를 사업유형과 연계하여 협동조합, 아동·노인 돌봄, 생활안전, 생태환경복원, 재직자 등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영역을 사업명으로 제시

□ (추진체계) 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자체가 추진

〈그림 9〉 평생학습도시 추진체계

|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도/시·군·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 사업공고 • 지원대상 지자체 최종 선정 • 사업비 교부 및 관리 • 사업관리 총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계획 수립 • 사업신청 지자체 계획 평가 및 결과 보고(→교육부) • 성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및 연수 - 사업결과 보고(→교육부) • 참고자료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서 및 운영 계획 작성·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시·군·구 예비심사 • 사업 시행 • 사업 성과관리 및 자료조사 협조 •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교육부, 국가진흥원) |

□ (담당부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시사점)

- 신규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특성화 도시의 단계적 도시 지정방안
 - 평생학습 특성화도시는 이전년도까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 중 10개 내외 지역을 평가하여 선정함
 - 평생학습 특성화 도시를 선정함에 있어 평생학습도시 간 경쟁구조를 형성함
- '01년부터 「평생교육법」의 개괄 조항에 근거하여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였고, '07년에 명시적 규정 마련
 -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함에 따라 자자체의 환경 변화로 인한 사업의 폐지가 어려움
- 특성화사업 유형을 지정하여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지자체는 특성화사업 유형을 선택하고 그 유형 해당 프로그램을 전체 프로그램의 50%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제 4절 시사점 및 지식재산도시사업의 방향성

□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지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일본의 경우 선진지재도시지원사업 대상을 기초지자체에 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희망하는 지역성 있는 사업의 제안공모를 통한 상향식 방식을 채용
- 지식재산도시 지정 사업도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IP 정책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상향식방식의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함
- 지역(지자체+지역주민)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중앙정부로 제안하면 중앙정부에서는 가이드 라인에 의거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화

□ 각 도시의 배경·환경 및 도시의 특색을 반영하여 고유한 지식재산도시 추진

- 도시별로 특성화된 고유한 역사·문화 자산이나 자연자원에 대한 보전, 개발 및 관리가 미흡
-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개성 있는 도시브랜드 및 도시정체성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외국 도시의 특화발전 사례 참고)
- 도시 정체성을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도록 도시별 특징과 전통을 살린 개성 있는 도시모습 만들기가 필요
- 중국의 ‘지식재산 시점도시’ 신청시 지식재산권업무가 비교적 독특한 지역특징과 발전 잠재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문화도시지정 사업의 경우도 도시 선정을 위한 기본 또는 필수 요소로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주제, 분야로 제시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모든 지정(선정) 신청시 이를 요구하고 있음
- 1회성 행사 형식의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이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 **지식재산도시 지정 후 지식재산권 관리수준 및 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한 단계별 사업 운영방식 도입**

- 중국의 경우 시점도시와 시범도시를 구분하여 시점도시로 비준을 받은 도시가 스스로 수준을 향상하여 시범도시로 전환(Shift)할 수 있는 운영방식을 택함
- 지식재산도시 지정 사업의 경우, 지식재산도시의 기초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추진 2년차 때 수행 과정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지식재산도시'로 지정하거나 비협조적 혹은 일정 성과 미달되는 도시에 대해서는 지정을 철회하는 방안 고려

□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및 전담 인력 배치**

- 각 지역의 지식재산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수행하며 지식재산정책의 실행 피드백 등 발전적인 지식재산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지식재산 관련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필요

□ **법령제정을 통한 사업 추진의 법적근거 마련**

- 문화도시사업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 제 15조(문화도시지정) 제 1항 및 시행령 제 11조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함
- 현재 지식재산도시 지정 사업에 관한 개별 근거 법률이 없으므로 추후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 기업, 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

- 도시 지정 사업에 따라 예산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부 지정도시사업은 자체적인 예산을 마련하고 있음
- 지원 종료 후, 지역의 자생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 재원 유치

□ **주민참여로 도시에 대한 비전(Vision)형성과 공유가 필요**

-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법·제도 및 사회

- 적 인식의 한계와 도시계획행정의 편의주의로 인해 주민참여가 형식적이고 제한적
-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도시발전 전략으로는 도시주민들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주민과 지자체간의 갈등이 초래되기 쉬움
 - 도시정책사업의 목표한 바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정부정책과 지자체 사업의 효율적 커뮤니케이션, 지자체장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지, 정책수혜자인 주민들의 성원과지지 등 다양한 요인이 필요
 - 따라서 정책수립과정에 지역주민을 동참시킴으로서 지식재산도시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

제5장

지식재산도시 지정사업



제 5장. 지식재산도시 지정사업

제 1절 사업의 법적·정책적 근거

□ (법적 근거)

- 지식재산도시 지정 사업은 「발명진흥법」 제3조 제2항 제4호 발명진흥 개괄조항에 근거하여 지식재산도시 지정을 추진
 - 지식재산도시 지정 사업은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발명진흥법 제 3조 2항에 해당된다고 봄
 - * 도시지정 관련 일반적 법률이 없으므로 추후 지식재산도시 지정에 관한 개별근거 법률제정이 필요

〈 발명진흥법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

- ① 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 2. 발명 활동의 진작과 발명 성과의 권리화 촉진
 - 3. 우수 발명의 이전 알선과 사업화 촉진
 - 4. **그 밖에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과거 지식재산도시로 지정되었던 일부 기초지자체(광주 남구, 대구 달서구, 안동시, 원주시, 제천시 등)의 경우 「지식재산 진흥조례」를 제정하였음

〈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창조적 역량강화와 자립적 성장여건 개선등을 핵심으로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추진하는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책적 근거)

- 현 정부는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현하고 지역의 자원과 인재를 활용한 지역의 혁신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 변화 및 주요 정책 목표·과제로 설정
 -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정하고,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하여 추진
-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본법(제8조)」에 따른 「제 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의 20개 핵심과제 중 하나로 'IP 인력기반 확충 및 지역 IP 역량제고'를 제시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제고 및 브랜드 개발, 향토기업 IP 역량 강화 지원을 제시하고 있음
- 지식재산도시 지정 사업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법적 근거와 국가 정책계획에 따른 정책적 근거에 의해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사업임.

제 2절 지식재산도시 지정사업 기본구성

- **(사업명)** 지식재산도시사업
- **(사업의 정의)** 지식재산도시 지정에 따른 지역지식재산 활성화
- **(사업의 기본 대상)** 지역 기초 시·군
- **(사업 규모)** 사업비는 예비사업비와 도시사업비로 구성되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국비-지방비 5:5 매칭 편당
 - (예비사업비) 지식재산도시 지정 첫 해에 추진체계구축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지원
 - (도시사업비) 도시사업비는 기초사업비와 심층사업비로 구성
 - 매년 기초 사업비(도시 당 매년 약 5억원)를 지원하되, 2년차 이상 도시는 도시사업비(도시 당 최대 2억원)를 지원
- **(사업 내용)**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재투자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지원
 - 지식재산도시 사업은 예비사업기와 본사업기로 나뉘어서 진행되며, 본사업기는 지식재산도시 육성기, 지식재산도시 확장기로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
 - (예비사업기)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체 구성 등 지식재산도시 운영에 관한 전반을 계획 수립
 - (본사업기) 본사업기는 육성기와 확장기로 구분하여 지원
 - (지식재산도시 육성기) 지식재산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이행지원으로 IP 서비스 지원 고도화와, 지식재산도시 유형에 따른 특성화 사업 지원
 - (지식재산도시 확장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지정기한)** 지식재산도시 지정기한은 5년으로 함

제 3절 지식재산도시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구성)** 사업추진체계상의 주체는 그 기능 및 역할에 따라 크게 사업추진주체, 사업참여주체, 행정지원주체, 사업지원주체로 구성됨

〈그림 10〉 지식재산도시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지식재산도시 사업을 기획·실행·관리하는 실제적 추진주체로서 사업추진주체는 지역지식재산센터나 사업의 전문추진조직이 되는 「지식재산도시 지원센터」를 새롭게 구성하여 지식재산도시 정책협의체와 실무 협의회를 통해 거버넌스를 구성

○ 사업추진주체를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 1) 지역지식재산센터의 기능 확대방안과 2)지식재산도시 경영전문조직 설치 방안이 있음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기능확대를 통한 사업추진) 오랜 경험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는 잘 형성되어 있으나 운영인력부족 및 신분불안으로 인한 높은 이직률, 직원들의 겸업 등의 문제로 안정적 운영의 어려움이 존재함
- (지식재산도시 경영전문조직설치를 통한 사업추진)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해 업무 집중도를 확보할 수 있으나 기초지자체에서 IP 전문인력발굴의 어려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하는 어려움이 존재

○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한계점에 대한 고찰

- 지역지식재산센터는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지역지식재산센터]의 구조로 인해 지역지식센터의 주요업무 범위가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도시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규모가 크지 않고(적은 수의 인력으로 운영중), 지역 상공회의소나 지역테크노파크내 위치하여 지식재산도시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기능, 규모, 입지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지자체가 지식재산도시로써 지역발전의 책임과 의무를 갖고 기획사업의 지속적 발굴 및 추진이 가능한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시민·연구소등과 상호 연계하여 특색있는 지식재산도시로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담기구(컨트롤 타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지식재산도시 지원센터(가칭)의 기능 및 역할

- 특허청의 지식재산도시 정책 추진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IP-코디네이터와 연계)
- 각 지역 지식재산도시 지정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컨설팅
- 지식재산도시 정책 및 사업추진 총괄 지원
- 정책주체간 거버넌스 연결기능(중앙정부-기초지자체 거버넌스 매개)
- 지식재산도시 지정 활성화에 대한 성과관리 및 홍보와 성과확산
- 지식재산도시 전문가(IP 코디네이터 및 심의위원) 운영 및 관리 / 정책 및 사업관계자 교육 등

○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유기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

- (제공서비스 차별을 통한 업무의 독자성 확보) 지식재산도시 사업추진체는 지역별, 고객유형별 차별화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운영되고 있는 특허창출 지원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
- (지역내 형성된 네트워크 활용)지역내 유관기관(지역대학, 기업체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지역지식재산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진행
- (IP전문 인력 pool 활용한 컨설팅) 기초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 및 계획수립에 대한 전문분야 자문 및 컨설팅

- **(사업참여주체)** 도시에서 지식재산도시 활성화사업으로 구현되는 프로그램 및 행사 등에 참여자이자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주체로 도시 시민, 지역의 기업, 연구소 및 대학, IP 서비스기관이 해당됨

- **(행정지원주체)** 사업 관련 되는 제반의 도시행정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특허청
와 지역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도시단위의 행정주체인 해당 기초지자체(기초시·군 및 광
역 자치구)로 구성됨
- **(사업지원주체)** 지식재산도시 활성화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관리를 실시하는
전문집단으로 'IP 기반 지역 코디네이터'가 사업활성화 지원 측면에서의 기능 및 역할을 함

〈표 20〉 사업 추진 주체의 기능 및 역할

| 주체구분 | 주체 구성 | | 기능 및 역할 |
|--------------|------------------|-----------------|---|
| 사업추진 주체 | 지식재산도시 경영전문조직 | 지식재산도시 지원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지식재산도시 조예에 근거하여 설치된 센터 • 지식재산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축으로 구성하는 정식조직 • 전문조직운영, 거버넌스 구축 및 유지 • 각 사업 기획 추진/ 사업예산 수령, 정산 및 결과보고 • 지식재산도시 정책협의체 운영 |
| | | 지식재산도시 추진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내 지식재산 전문가 및 지역발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업추진위원회 • 정책협의체 운영 • 지식재산도시 사업에 대한 전체 정보 공유 및 상호토론과 추진지원 |
| 사업실행 참여주체 | 사업실행 및 참여자 | 시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아이디어 제안, 사업참여(프로그램, 행사, 교육 등) • 공모 및 제안사업의 프로젝트 실행자로서 참여 각 분야 및 사업에서 도시를 움직이는 행동 주체로 참여 |
| | | 기업/연구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위치한 대학 및 연구소/ 기관 및 기업체 간의 산학협 력과 연구개발에 참여 |
| 행정지원 주체 | 정부 | 특허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및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기획·조정 관리 • 정책사업 성과관리, 사업예산지원(국비/인센티브 지원) • 사업 추진 및 통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 | 지자체 | 기초 지자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신청 및 예산지원과 그에 대한 관리 실시 • 지식재산도시 행정적 지원 및 관리 • 지식재산도시 지원센터 활동 지원 • 사업추진협의체와 거버넌스 참여와 유지 |
| 사업지원 주체 | 전문지원 조직 | IP 지역 코디네이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컨설팅 및 자문 • 지식재산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업무 • 정책사업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

제 4절 지식재산도시 사업 예산

- (사업 예산) 지식재산도시 지정사업 3차년도까지 총 47억원 예산 필요

- (사업 예산 구성) 예비사업비(1억) + 도시사업비(5억-최대 7억)으로 구성
 - (예비사업비) 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을 위한 예비단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계획수립, 사업추진체(지식재산도시 지원센터) 조직, 거버넌스 형성, 시민의견수렴, IP 코디네이터를 통한 컨설팅 등
 - 지식재산 도시로 지정된 첫 해에 1억원 지원
 - (도시사업비) 사업실현단계로 각 도시별로 지속사업을 추진하며 도시별 국비 최대 5억원 지원
 - (기초사업비) 지자체가 작성한 “지식재산도시 조성계획”에 맞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각 도시별 5억원을 지원
 - (심층사업비) 매년 중간 모니터링 및 사업 완료 시점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비 편성에 반영하여 도시별 차등지원 (최대 2억원)
 - 본 사업을 시작한 지자체는 지자체간 평가를 통해 +2년 차부터 매년 우수 도시 2곳(“지식재산 우수도시”)을 선정하여 본 사업비 추가 지원

- (소요 예산 추이) 지식재산도시 지정사업 3차 년도까지 총 53억원 예산 필요

〈표 21〉 연도별 예산 추이(예상)(국비)

| | | 0년 | +1년 | +2년 | +3년 |
|----------|-------|---------------|----------------|----------------|----------------|
| 신규 지자체 수 | | 2 | 3 | 3 | 3 |
| 총 지원지자체수 | | | 5 | 8 | 11 |
| 도시사업비 | 심층사업비 | | | 4억 (2개×2억) | 4억 (2개×2억) |
| | 기초사업비 | | 10억 (2개×5억) | 25억 (5개×5억) | 40억 (8개×5억) |
| 예비사업비 | | 2억 (2개×1억) | 3억 (3개×1억) | 3억 (3개×1억) | 3억 (3개×1억) |
| 총예산 | | 2억 | 13억 | 32억 | 47억 |

□ (예산 조달 방식)

○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발전계정으로 편성·조달

- 국가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7:3, 5:5 (국비 70% : 지방비 30%, 국비 50% : 지방비 50%)등의 매칭 펀드로 편성*

* 예산 회계 및 조달방식은 추후 사업진행시 지자체 수요 조사를 통해 매칭펀드 비율은 조정 및 협의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고려하여 **현물로 출자****

* 현물 출자는 출자대상기관의 자본 확충과 중식을 위해 금전 이외의 재산(부동산, 상품 등의 동산 등)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본 사업에서는 인력제공(지식재산 담당 공무원 배정)등의 방법으로 출자하는 것을 고려

○ (예산 편성 방식) 각 지자체는 “지식재산도시 조성계획”에 근거하여 특허청에 예산 신청 후, 특허청은 이를 검토하여 지출한도 내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

제 5절 ▶ 추진절차

- 지식재산도시 추진절차는 사업시행 계획 공고→사업계획서 접수→지식재산도시 사업계획서 평가→지식재산도시 지정통보→지식재산도시 사업추진→사업평가의 단계로 진행

〈그림 11〉 지식재산도시사업 추진절차



제6장

지식재산도시 지정



제 6장. 지식재산도시 지정

제 1절 지식재산도시 지정

- (지식재산도시유형 지정방식) 핵심가치에 근거하는 기본적인 사업유형을 구분하되 도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탄력적인 유형구조 지정
 - 지식재산의 개념*으로부터 기술 중심 도시와 무형 재산(역사, 전통)중심 도시 유형을 도출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으로 창업을 중점 지원하는 도시 유형을 도출
 - *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지식재산 기본법 제 3조(정의))
 - 이를 바탕으로 3가지 유형의 지식재산도시로 유형화하여 구분하고 종합 지원
 - 1) IP-첨단산업도시, 2) IP-창업도시, 3) IP-문화관광도시, 4) (지역자율유형)*도시로 지식재산도시 지정분야 세부 구분
 - * 지식재산도시 신청을 원하는 지자체 중 지정유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역자율유형을 제안

〈표 22〉 지식재산도시 지정 유형

| 구분 | IP-첨단산업도시 | IP-창업도시 | IP-문화관광도시 |
|----|---|---|--|
| 개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신산업 혁신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화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과 대학 연구소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내 창업기업의 기술 지식재산권화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역사 및 전통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로 승화시켜 이를 지역지식재산권화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도시 |

| 구분 | IP-첨단산업도시 | IP-창업도시 | IP-문화관광도시 |
|------------|---|--|--|
| 주요 사업 및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사업 및 혁신산업에 대한 핵심기술 정보 공유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IP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을 위한 기술 정보제공 산학연 연구개발협력 창업공간 및 기술장비대여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산업을 통한 지역브랜드 구축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 문화제와 연계한 축제콘텐츠 개발 |
| 예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IP거점도시 인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실리콘밸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전통문화의 도시 안동 |

1. IP 첨단산업도시

□ (개념)

- 도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신산업 혁신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화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도시

□ (주요사업 및 활동)

- 신사업 및 혁신산업에 대한 핵심기술 정보 공유
-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IP서비스

□ (IP 첨단산업도시 예시)

-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IP 거점도시 인천
 -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의 특·장점을 활용해 지역특색에 맞는 IP 특화 전략을 구상
 - 인천시에 주력하는 산업에 기술지원과 지식재산 융합지원등 전략적으로 집중
 - 중국을 타겟으로 지식재산보호체계구축

2. IP 창업도시

□ (개념)

- 연구기관과 대학 연구소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내 창업기업의 기술 지식재산권화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도시

□ (주요사업 및 활동)

- 창업을 위한 기술 정보제공
- 산학연 연구개발협력
- 창업공간 및 기술장비대여지원

□ (IP 창업 도시 예시)

- 미국의 실리콘밸리
 - 캘리포니아 주의 창업 및 지식재산보호에 실질적이고 선진적인 법제를 가짐
 - 아이디어의 지식재산권화 및 사업화를 위해 다양한 행위자(인큐베이터, 벤처캐피탈리스트, 엔젤투자자 등)들이 주최하는 컨퍼런스, 미팅장소가 수시로 마련
 - 벤처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및 아이디어 교류를 위한 샵들이 활발하게 운영

3. IP 문화관광도시

□ (개념)

-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역사 및 전통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로 승화시켜 이를 지역지식재산권화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도시

□ (주요사업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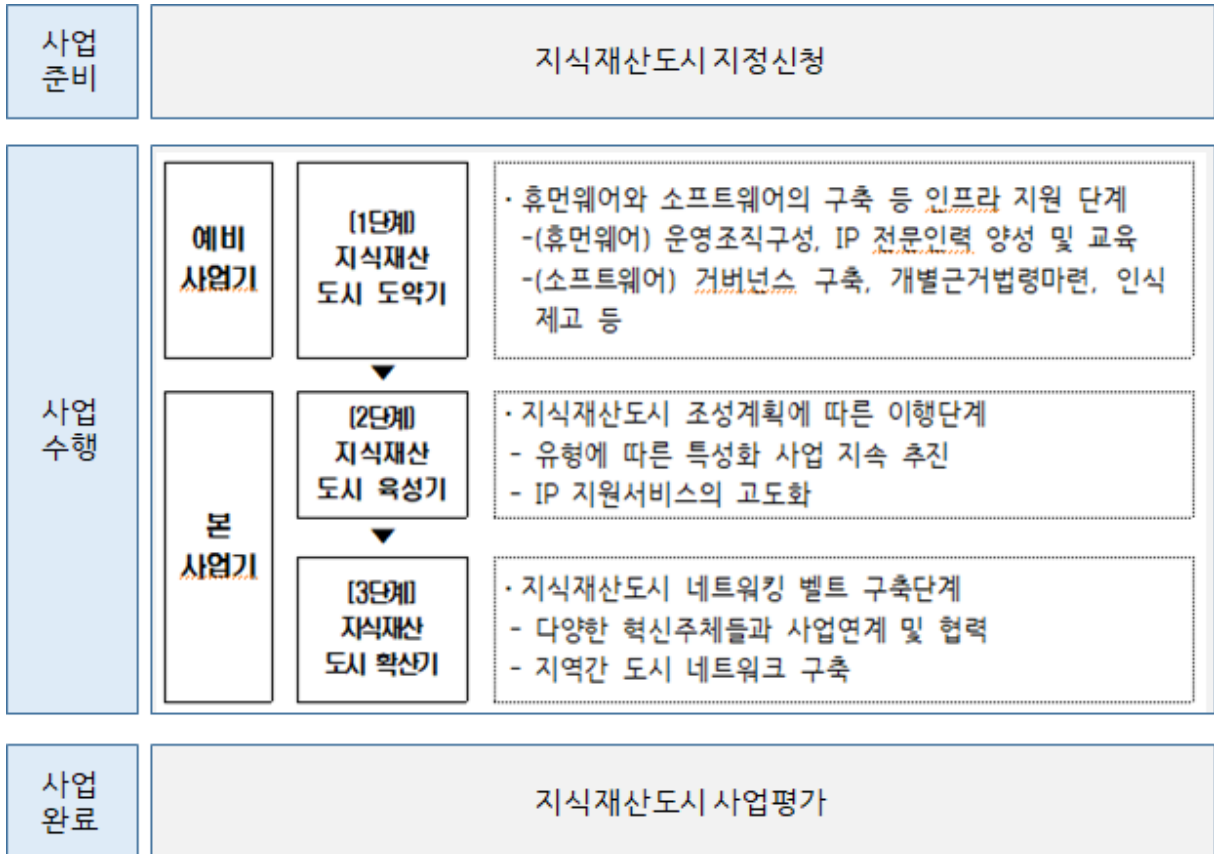
- 전통산업을 통한 지역브랜드 구축
-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
- 문화제와 연계한 축제콘텐츠 개발

□ (IP 문화관광 활성화 도시 예시)

- (사례) 안동시 유교문화 콘텐츠 개발
 -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라는 도시랜드를 특허청 등록하여 대내외적에 알림으로서 안동시의 뚜렷한 정체성을 확보
 - 관광산업에만 활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 안동간고등어, 안동사과, 안동산약과 안동찹닭, 안동한지 등 지역특산품에 지리적 표시단체 표장을 붙임
 - 문화체험센터 등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헛제사밥과 제례문화나 음식문화를 중요한 자원으로 하여 음식의 유래나 전설 등 음식 안에 들어있는 스토리를 꺼내 관광객에 먹는 즐거움과 함께 새로운 것 즐길 거리를 제공

제 2절 ▶ **사업추진단계**

□ (추진 단계)



□ 지식재산도시 지정절차는 지자체의 지정 신청부터 지식재산도시 사업평가까지 3단계로 구성되어짐

- (1단계: 지식재산도시 지정신청 및 지정심의) 지자체에서 지식재산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특허청에 지식재산도시 지정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받아 지정됨
- (2단계: 사업수행단계) 조성된 지식재산도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
- (3단계: 사업평가) 사후관리적 측면에서 지식재산도시 지정 후 1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

제 3절 ▶ 추진 단계별 주요내용

I. (1 단계) 지식재산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신청

- 지자체는 지식재산도시 지정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지식재산도시 조성계획안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함
 - 조성계획 수립의 주요내용은 크게 도시현황진단, 주요사업계획, 사업추진시행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현황진단) 도시 현황 조사 및 진단에 대한 내용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기반 형성에 대한 진단
 - (사업계획) 지식재산도시 사업계획안으로 조성방향, 사업구상 및 계획, 지정분야 특성화 계획, 추진체계, 예산 투입계획에 대한 내용을 작성
 - (사업운영관리) 지식재산도시 추진성과 및 지속가능 관리계획 및 추진 로드맵을 구성

〈표 23〉 지식재산도시조성계획 수립 주요내용(예시)〉

| 구분 | | 주요내용 | |
|------|----------------|----------------|--|
| 현황진단 | 계획개요 | 계획의 개념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 계획의 활용방향 및 방법 |
| | 도시현황 진단 | 지식재산환경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의 경제현황 • 지식재산 현황 • 지식재산 정책 환경 |
| | | 지식재산자원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도시 지정 유형 결정을 위한 • 지식재산자원에 대한 조사 분석 |
| | | 정책수요자 의견수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수요자인 시민과 지역내 기업의 의견수렴결과(사업제안수렴) |
| 사업계획 | 사업구상 및 추진계획 | 비전 및 방향설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도시 추진방향, 목표, 전략 • 추진과제 도출 |
| | | 사업구상 및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추진사업별 사업목적/주요내용/추진프로세스/사업규모/성과목표/기대효과(안)등을 상세 제시 |
| | | 지정분야 특성화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도시 특성화 방향제시 • 특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방안 제안 |

| 구분 | | 주요내용 | |
|------|----------|-----------|---|
| | 추진체계 | 조직 및 운영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거버넌스 구성 지식재산도시 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운영을 위한 인력에 대한 운용계획 |
| | 예산 | 예산 및 재원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예산 종합계획 사업-예산 투입운용 로드맵 사업예산 재원마련 계획 |
| 운영관리 | 추진성과 | 성과 관리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도시 성과목표를 연차별, 단기-중기-장기 등 각 시기별 목표를 구성 사업성과측정기법, 프로세스, 관리 방식 제안 |
| | 추진로드맵 구성 | 단계별 추진로드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도시 지정부터 중장기까지 포함되는 종합계획안 제시 |

I. (1단계) 지식재산도시 선정 평가 및 심의

□ 지식재산도시 선정 평가 및 심의를 위해서는 지식재산도시 선정을 위한 검토 주체를 구성하고 개발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

□ 지식재산도시 평가 심사

- 지식재산도시 평가위원단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
 - 지자체가 제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항목에 따라 관련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평가하여 현지 심사대상 기관을 선정하며, 현장심사는 서류심사 내용이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 및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상대 평가한 후 일정배수의 후보 기관을 선정하여, 지식재산도시 선정위원회에 추천함.
- (서류심사)지자체의 제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항목에 따라 관련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평가하여 현장 심사대상 기관을 선정함.
 - 1차적으로 평가단의 심사위원들로부터 서류심사를 받게 되는데, 서류심사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점수를 받은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실시
 - 각 심사위원은 상호 독립적으로 평가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심사기준의 각 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심사대상 지자체를 채점함

- 이 서류심사단계에서는 서류에 나타난 모든 자료 및 정보를 일단 사실로 가정하고 평가하나, 심사대상 지자체가 현장방문 심사를 받게될 때 이 단계에서 서류상으로 제시되었던 자료 및 정보의 출처와 타당성, 그리고 실제 적용여부가 검토됨
- (현장심사) 서류심사 내용이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 및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상대평가하여 일정배수의 후보 기관을 선정하여, 지식재산도시 선정위원회에 추천
 - 현장심사는 서류심사만으로는 불분명한 부분들에 대해 명확히 평가하고, 제출서류에 제시된 정보들의 사실진위 여부 검증 절차임
 - 현장 방문단의 편성은 심사대상 지자체의 규모와 방문심사의 예상되는 복잡성에 따라 그 수가 결정되는데, 최소 3~5명의 심사위원들로 1개 조(組)를 구성하거나, 10명 정도가 1팀을 이룸
 - 현장방문 심사위원들은 가능한 서류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로 구성하며, 현장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중 1인(실무책임자)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함

□ 지식재산도시 지정 심의

- 선정위원회는 선정평가단이 추천한 후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지식재산도시로 최종 선정함
 - 심의에 올라온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식재산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발표를 통해 심의위원회가 최종 심사
 - 최종 심사결과에서 일정 요건 이상 수준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지자체에 대하여 지식재산도시 지정대상으로 추천함.

□ 평가지표 개발방법 및 지표구성

- 평가지표 개발은 국내 기존의 평가항목모델 중 우수사례의 발굴과 벤치마킹을 통한 평가항목 수립
 - 평생학습도시 평가지표, 문화도시 평가지표 등에서 설정한 기존의 평가지표를 지식재산친화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수정하여 활용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부분의 지표들을 신규로 개발하여 평가지표로 구성

○ 지표의 구성

- 지식재산도시 지정을 위한 지표는 아래와 같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부문별 지표는 모두 17개이고 개별 지표는 총 56개의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음.
- 계층구조는 의사결정자들의 합리적 기대에 부합하는 완전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가정함. 즉, 계층구조는 의사결정에서 고려되는 모든 사항을 완전하게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수준의 수가 많아 계층 구조가 깊어지면 계산상의 복잡성이 유발되므로 통상 3~7 수준으로 계층을 형성함.

〈그림 12〉 지식재산도시 지정 평가 지표 도출을 위한 계층구조



□ 평가 지표 항목

○ 지식재산도시의 비전과 목표

| 영역 | 평가항목 | 비고 |
|--------------------|---|----|
| 1. 비전의 적합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의 명확한 제시 • 시정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비전 설정 • 도시발전계획과의 적합성 • 현행 지식재산수준과 비교시 지식재산도시 목표설정의 타당성 | |
| 2. 목표 수립의 적합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사업목표의 제시 •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정도(위원회 참여) • 연도별 성과지표(예; 참여율) 유무 | |
| 3. 추진계획의 적절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과 목표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이나 계획 수립 정도 및 내용의 적절성 •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일정의 적절성 | |
| 4. 소요자원분담 및 자원조달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지식재산진흥 관련 소요예산 비중 • 지식재산 진흥관련 소요 예산조달방안의 현실성 • 매년 지식재산도시사업의 예산수립현황 및 집행의 타당성 | |
| 5. 정치적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의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의 공약, 시정방향, 지식재산도시 선언 등 - 단체장의 지식재산 관련 행사 및 회의 참석 • 지방의회의 참여 및 지원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 관련 질의 수 | |
| 6. 파급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 대한 파급효과 및 기여도 여부 | |

○ 지식재산도시 추진체계

| 영역 | 평가항목 | 비고 |
|----------------|--|----|
| 1. 조례 제정 및 적절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진흥 관련 조례 제정 • 지식재산진흥 관련 조례의 지역 지식재산활성화에 대한 적합성 | |
| 2. 추진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지식재산 추진운영위원회 설치 유무 • 지식재산 추진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운영위원장의 조직내 지위 • 추진운영위원회 운영 횟수 및 활동내용 | |
| 3. 전담부서 및 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전담부서 설치 유무 • 지식재산전담부서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회의 개최건수, 회의참석 횟수 등 • 지식재산전담 부서의 인력 및 조직규모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전체 공무원수 대비 지식재산업무 담당 행정인력(공무원)수 - 지식재산 전문 인력 유무 및 전문성 정도 - 전담부서 장의 지위 | |

○ 지식재산도시 운영사업

| 영역 | 평가항목 | 비고 |
|-------------------|---|----|
| 1. 지식재산진흥 프로그램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전체 사업수 및 예산 대비 지역의 지식재산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건수 및 예산 비중 • 지자체 전체 사업수 및 예산 대비 지식재산의 진흥 및 이해증진 관련 세미나, 포럼, 워크샵 개최, 컨퍼런스, 박람회 등 지원사업건수 및 예산 비중 • 지자체 전체 사업수 및 예산 대비 지식재산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건수 및 예산 비중 • 지자체 전체 홍보건수 및 예산 대비 지식재산 관련 홍보건수 및 예산 비중 | |

○ 지식재산도시의 지원체제

| 영역 | 평가항목 | 비고 |
|-------------------|--|----|
| 1. 지식재산 기반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전체 시설수 대비 지식재산기반관련 시설수 • 지자체 전체 인력 대비 지식재산기반관련 전담인력 •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지식재산기반시설 연간 운영비 비중 | |
| 2. 종합정보망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지식재산도시 조성관련 지식·정보의 제공을 위한 전용홈페이지 구축·운영 및 제공컨텐츠 수준 | |
| 3. 네트워크 및 협력관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내 관련 부서간 협력체제 우수성(협력정도) • 지식재산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지자체와의 연계협력체제 우수성(협력정도) • 지식재산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예;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역 대학, 기업체 등)과의 연계협력체제 우수성(협력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관계자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 • 지식재산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체결건수 •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지원 제도의 활용도 | |
| 4. 연구수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전체 용역과제수행건수 및 과제예산 대비 지식재산 관련 용역 과제수행건수 및 과제예산 비중 | |
| 5. 관련 단체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전체 단체 또는 협회 지원건수 및 예산 대비 지식재산 관련 단체 또는 협회 지원 건수 및 예산 비중 | |

○ 지식재산도시의 성과

| 영역 | 평가항목 | 비고 |
|---------------|--|----|
| 1. 지식재산생산(획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주민 1인당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지역 전체 인구 대비 산업재산권 출원인수 지역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증가율 지역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인수 증가율 | |
| 2. 지역경제성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지역 기업 종사자수 대비 2,3차 산업 중 지식기반제조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수 전체 지역기업수 대비 창업기업수 전체 지역기업수 대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의 인증수 | |

II. (2단계: 사업수행단계)

□ 조성된 지식재산도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

* 주요 사업 수행 내용은 다음장의 추진 활성화 전략을 참고

III. (3단계: 사업평가)

□ (중간평가) 사후관리적 측면에서 지식재산도시 지정 후 1년 마다 평가를 실시

○ 지식재산도시지정 지정유효기간 동안의 중간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서를 제출하고 지식재산선정위원회가 이를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지식재산도시 심층사업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평가가 일정수준에 미달될 경우 지정 해지 및 철회

□ (사업종료 최종평가) 지식재산도시는 최종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서를 제출하고 이를 지식재산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인증여부를 결정

- 지식재산도시 지정 후 일정기간을 두고 평가를 통해 ‘인증’이라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지식재산도시의 역량제고의 연속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제7장

지식재산도시 추진 활성화 전략 및 지원



제 7장. 지식재산도시 추진 활성화 전략 및 지원

제 1절 ▶ 실행력 제고 방안

I. 개별 근거 법령 마련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법령체계 정비
 - 지역 지식재산진흥 관련 정책 및 사업내용은 지식재산 기본법과 발명진흥법 및 각 지자체 조례 등에 산재되어 있음
 - 현행 법제를 바탕으로 시행 중인 지역 지식재산 진흥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효율적인 법제 개선방향 모색
- 지자체별로 '지식재산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자체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식재산 기반을 조성
 - (現) 지식재산도시의 법적 근거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추진
 - *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조례 제5402호'로 2012년에 제정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의 개요〉

- **(목적)**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의 시책과 서울특별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의 책무,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지식재산정책책임관 지정 운영,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에 관한 지원, 지역 특성화 사업 실시,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유관기관 협력

- 지식재산도시의 정의 규정 마련 (제2조)
- 지식재산도시 지정 주체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과 그 구체적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 신설 (제26조의3 신설)

〈 해외의 지역지식재산전략 관련규정 〉

□ 일본

- 2002년 11월 제정된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에 근거하여 설치된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매년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을 발표
 - 지적재산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기본방침 및 세부 시책을 제시하고 있음
- 각 지역별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知的財産戦略推進計画)을 발표

〈 홋카이도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2018-2021) (예시) 〉

- 제1장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관리의 확립과 지적재산 활용 촉진
- 제2장 기업의 해외 전개에 대응한 지적재산권 보호
- 제3장 지적재산을 활용한 브랜드 창출 지원
- 제4장 인재 육성 및 지적재산권 학습 지원 추진
- 제5장 추진체제의 충실 강화

□ 중국

- 국무원의 ‘새로운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 하는 것에 관한 의견(关于新形势下加快知识产权强国建设的若干意见)’에 따라 매년 지역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및 실시
 - 국무원 산하 지식재산권전략 실시업무 부처간 연석회의는 동 의견에 근거하여 지역 지식재산권 전략실시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조사를 수행하며,
 - 각 지역 지식재산권국의 협조를 통해 매년 ‘전국 지방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발표
- * 지식재산권 관리체제 개혁,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촉진, 중점산업의 지식재산권 해외 배치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지식재산권 대외협력 제고 등과 관련하여 전국 각 지역의 업무내용, 구체적인 임무 등 수록

- 국가지식산업국 등 유관기관은 전국 2개 지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역 지식재산권전략 목표 이행실적 등 성과 점검
- 2008년에 발표한 국가 중장기 지식재산권 전략인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에 의거, 각 지역의 지식재산 계획인 지역 ‘지식재산권전략강요’ 수립
 -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는 지역 및 산업별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

〈청두시 지식재산권전략강요(2009) (예시)〉

- (발전목표) 2020년까지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국제법규에 부합하는 지식재산권 정책시스템 및 업무관리 체제를 수립하고,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관리 능력을 강화하며 전 사회의 지식재산권 인식을 전면 제고함
- 5년간 목표
 - 특히 출원건수 확대, 상표출원건수 연평균 증가율 10% 달성, 저작권 등록 연평균 증가율 20% 이상 달성, 지리적 표시 보호상품 15건, 지식재산권 관리 및 서비스 능력 제고, 전문 인재 양성
- (중점업무 및 조치) 지식재산권제도 수립, 지식재산권 촉진정책 완비, 지식재산권 관리체제 완비

- 각 지역별 지식재산권 촉진 및 보호 조례 제정
 - 동 조례는 각 지역 인민정부가 지식재산권의 촉진과 보호 업무를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전체계획에 삽입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발전계획을 수립·실시하는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
 - 지식재산권 촉진과 보호를 위한 예산 편성과 기업, 고등교육기관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 등 명시

〈난징시 지식재산권 촉진 및 보호 조례 (예시)〉

제1조 지식재산권의 창출, 활용, 보호, 관리를 촉진하고, 자주 혁신능력을 강화하며 경제사회의 전면적인 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등 유관 법률, 법규에 의거하고 본 시의 실제상황과 결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시 행정구역 내 지식재산권의 창출, 활용, 보호, 관리 및 관련 활동에 본 조례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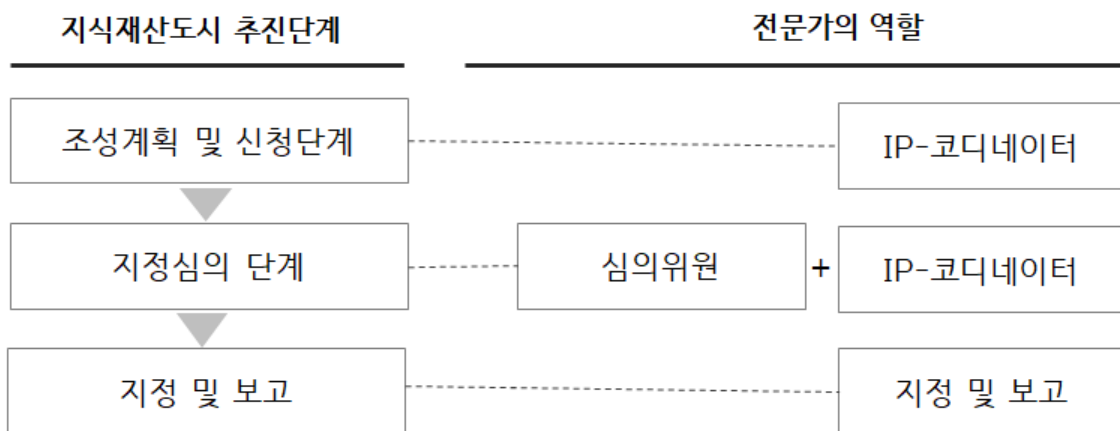
제3조 본 조례에서 지칭하는 지식재산권은 전리권, 상표권, 저작권, 식물신품종권, 집적회로배치설계권,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그리고 법률, 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지식재산권을 가리킨다.

(생략)

II. 지식재산도시 전문가 통합운영제도 도입

- 지식재산도시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IP 코디네이터를 통합적으로 임명 및 운영하는 통합구조의 전문가 통합운영제도가 필요
 - 지식재산도시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정책 추진 발표시 전국 각 도시의 관심과 신청으로 인해 지식재산도시 지정관련 평가 및 심의 과정에서 매우 많은 수의 심의위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도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 도시가 각각의 사업계획서를 갖고 지원함에 따라 다수의 전문가 지원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지식재산도시 관련 검토 및 심의 과정에서 일관성 유지 필요
- 기본적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는 IP-코디네이터로서 지식재산도시 사업의 컨설팅 활동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지식재산도시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및 활동하는 통합구조의 “지식재산도시 전문가 통합운영제도”를 의미함
 - 이를 통해 지식재산도시를 추진하는 지정사업 신청 단계부터 지정심의단계까지 도시 지원 및 지원과 관리방법을 일원화하고 연속성을 부여하면서 지식재산도시 추진·지원·관리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도를 향상

〈그림 13〉 지식재산도시 전문가 통합운영제도의 전문가 역할



□ IP 지역 코디네이터의 역할

○ (필요성)

- 중앙정부 정책 차원: 지식재산도시 지정 심의 및 지정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차원
- 지자체 사업실행 차원: 지식재산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추진 방법 및 노하우가 부족하므로 실행오류의 최소화

○ (구성 및 운영) IP 지역 코디네이터는 지식재산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발명진흥원,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에 위탁하여 운영

○ (주요 업무 내용)

- 정책 사업의 추진, 모니터링, 평가과정에 대한 전문분야 참여 및 지원
- 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 및 계획수립에 대한 전문분야 자문 및 컨설팅
- 지식재산도시 지정에 따른 실행 자문 및 추진과정 컨설팅

제 2절 ▶ 활성화 지원 방안

- **(지원방안)** 지식재산도시 활성화 지원은 예비사업단계와 본사업 단계에 걸쳐 운영되며 모든 도시 유형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공통지원과 지정 유형에 따른 유형별 지원으로 유형별 지원으로 구분됨

〈표 24〉 지식재산도시 추진 활성화 지원방안(예시)

| 사업단계 | 내용 | IP 첨단산업 | IP 창업도시 | IP 문화·관광도시 |
|-------------|------------------|--|---|--|
| 본 사 업 | 육성기 | ① 지역특화전략사업과 연계 ② 기업군, 산업군에 대한 IP 서비스 지원 ③ 기술거래 및 기술이전 지원 ④ 해외진출에 대응한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 ①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② 코워킹플레이스 지원 ④ IP펀딩조성 | ① 지역 브랜드 구축 사업 ② 지리적표시 권리화 ③ 지역 축제 및 관광지에 대한 상표권 취득 ④ 발명거리 조성 |
| | II. IP지원 서비스 고도화 | ① 기술 금융 및 IP금융지원 ① 인적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② 지식재산 전주기 원스탑 서비스 ③ 지식재산서비스업의 지역내 이전 지원 | | |
| 예비 사업 | 도약기 | I. 인프라 구축지원 ① (휴먼웨어 구축) 사업 추진 운영조직 구성 ② (소프트웨어 구축) 개별 근거법령 마련, 발명 문화형성 및 지식재산 인식제고 | | |

* 확장기의 지원 사업은 기대효용극대화 방안에서 설명

I. 지식재산도시 공통지원

1. 인적 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 관련담당자 및 공무원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지원

○ 각 도시의 정책·계획·사업·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식재산 담당 공무원에 대한 학

습프로그램 발굴과 기회를 확대

- 지역 커뮤니티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지식재산도시 사업에 선정된 담당공무원의 워크숍을 통해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성을 강화
- 신기술 교육 강화를 위해 산업계에서는 해당분야 최신 기술동향을 지식재산담당자에게 설명하고, 지식재산당자는 지식재산관련 사업화 성공사례나 침해대응방안 등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쌍방향 제공

□ 지식재산전문인력의 인적교류 지원

- 특허청의 전문인력을 지식재산도시에 파견하여 지식재산도시 지원센터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지도함으로서 지식재산도시의 전반적인 지식재산역량 수준을 제고
 - 대학 및 연구소, 지역내 기업의 지식재산서비스 지원
 - 파견기관 지역 내 대학 및 기업 등 관련 기관 간 지식재산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기술이전 계약 검토 지원 등 기술이전·사업화 지도
 - 발명인터뷰 및 공공 IP활용 사업 지원 운영 등
- (예시: 일본) 아이즈대학에 최초로 특허청 심판부 심판관을 파견
 - 아이즈대학은 산학관 제휴를 활성화하고, 기술 연구의 발전과 행정과의 원활한 조정 등을 위해 JPO에 인재 파견을 요청
 - (파견기간) 2년의 기간동안 파견되었으며, 상황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
 - (주요업무) 지역 내의 ICT(정보통신기술) 오피스 사업 및 후쿠시마 국제연구산업도시(혁신 및 코스트) 구상 사업에서 지식재산 활용 등 아이즈대학의 강점을 살릴 방법 지원, 지식재산 교육, 지식재산 추진 관리 등
- 각 도시의 정책·계획·사업·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식재산 담당 공무원에 대한 학습프로그램 발굴과 기회를 확대

□ 지식재산교육 및 훈련 지원

- 대학내 산업별 특허정보검색·분석, 특허명세서 작성 등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식

재산서비스 업체 등 일자리 창출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 권역별 선도학교 지정 및 인센티브 지급으로 이러닝 활용을 제고하여 균형 잡힌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및 확대
- (예시: 중국) 전국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점·시범업무 실시
 - 2020년까지 '상하이시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학교' 30개, '전국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점(试点)학교' 8~10개, '전국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示范)학교' 4~5개 양성
 - (지원내용) 상하이시 지식산권국은 시범학교에 상응하는 업무비용을 지원함
 - 상하이시 지식산권국,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적시에 시범학교가 다양한 형식으로 지식재산권 교육성과 전시, 홍보활동, 연구토론 등 활동을 수행하도록 조직함
 - 각 구(区) 지식산권국, 구(区) 교육국은 '상하이시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학교' 및 '전국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학

2. 지식재산 전주기 원스탑서비스

- IP 출원/활용/보호를 모두 포함한 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찾아가서 지식재산 상담·지원(연 2~4회)
 - 입주 기업의 IP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위주의 지식재산 교육
 - 산업단지 내 지식재산 자료 및 정보 검색, 출원 등이 가능한 시설 마련

3. 지식재산서비스 업체 이전 및 유치 지원

- 고급 일자리 창출 및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인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지역내 입주 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기회 포착

* IP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0.916 (순 산업 평균: 0.726), 취업 유발효과: 21.096

(순 산업 평균: 14.026) ('12. 특허청)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지역 내 타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매개체로 활용
 - 변리사 사무소, IP컨설팅 업체 등 지식재산 서비스 기관의 도시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 및 사무소 입주터·임대료 등 지원
 - 지역 은행과 협력하여 해당 도시로 이전하는 지식재산 서비스 업체에게 은행 융자 혜택 지원
 - 이전한 지식재산 서비스 업체가 해당 지역의 지식재산 선도 대학 IP전문 인력 신규 고용시 고용 보조금 지원

〈표 25〉 지역 이전/신설 IP 서비스 업체 주요 지원 사항(안)

| 구 분 | 지 원 내 용 |
|----------|---|
| 지방세 감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법인세 등 국세는 기재부와 협의 필요) |
| 이전/신설 보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 이전/신설에 따른 임대료 등 건물비용 일부 지원 • 既 조성된 산업단지, 클러스터 內 입주 공간 제공 |
| 경영안정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은행과 협력하여 IP서비스 사무소 신규 개소 또는 이전에 필요한 자금 융자, 금리 인하 제공 |
| 고용·훈련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IP 전문인력 신규 채용시 1인당 월 인건비 일부 지원 • 업체 직원의 IP 교육·훈련 비용 일부 지원 |

II. 지식재산도시 도시유형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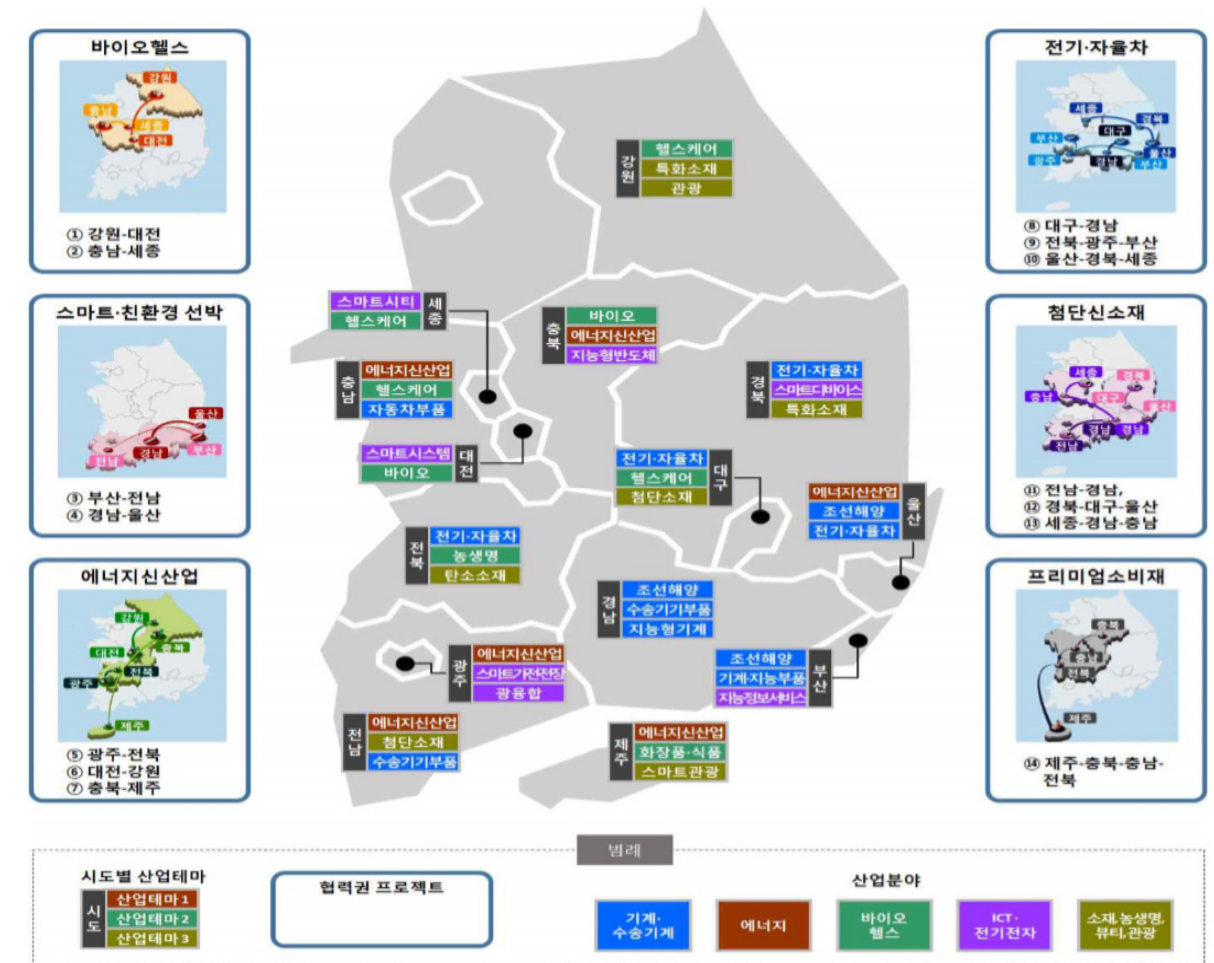
1. IP-첨단도시

□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하여 관련산업 핵심 기술 특허 출원 및 제품개발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일부인 지역혁신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도모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주도 산업혁신 프로젝트 추진 (산업부, 중기부)
 - 제조업 경기둔화가 뚜렷한 4개 지역(전북,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경남)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추진
 - 지역 주도 맞춤형 산업혁신을 위하여 권역(2개 이상 시도) 및 시도 단위에서 지역 수요에 기반한 혁신 프로젝트 추진 지원
 - 6대 신산업 분야 벨류체인 내 전후방 연관기업이 참여하는 14개 시도 간 협력프로젝트 지속 추진
 - 14개 시도별로 혁신도시·산단 등을 연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하여 신산업 실증 프로젝트 및 앵커기업 유치 추진

〈그림 14〉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시도별 주요 산업테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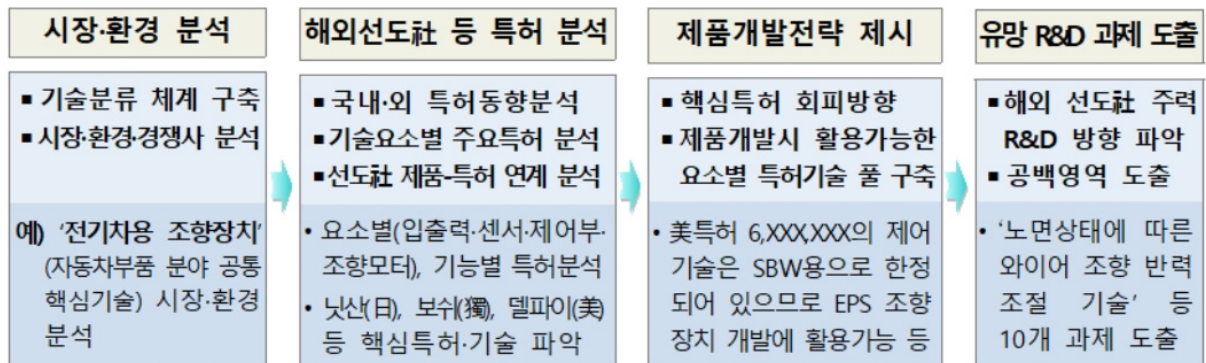
○ (연계방안)

- 지역산업의 고도화·다각화·전환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지원을 위해 지역 수요에 맞춰 지식재산 관련 각종 정보 및 분석자료 제공
- 이를 통해 지역내 주력산업 관련 핵심 기술 특허 출원 및 제품개발 도모
- 14개 시도 주력산업(48개) 분야 기업의 제품개발·사업화 지원

□ 개별기업 단위에서 “기업군/산업군”에 대한 IP 서비스 지원

- 중소·벤처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수의 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신기술·애로기술의 특허전략을 도출해 공유·확산
 - 해외 선도기업 특허 분석을 통해 우리 스타트업들에게 신기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 활용 가능한 특허기술 풀을 구축하여 후발주자의 제품개발전략을 지원하고, 유망 R&D 과제도 도출

〈표 26〉 기업군에 대한 IP 서비스 제공 방안(예시)



□ 기술거래 및 기술이전 지원

- 기업의 우수 특허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활용, 사업화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 특허기술 거래에 필요한 상담, 특허기술 매칭, 중개 협상 및 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 검토 등 지원

- (수요 발굴) 수요기술 조사, IP- Market 구매기술 등록 및 사업 설명회 등에서 진성 수요기업을 발굴
- (수요자 면담) 수요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경영진단과 수요 특허기술 분석 등을 통해 특허기술 거래 전략 수립
- (중개 협상) 거래를 희망하는 공급 기업(기관)과 수요 기업의 매칭을 통하여 특허 기술 중개 협상 지원
- (후속 지원) 기술이전 후 추가 연구개발 등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부처 사업화(R&BD), IP 금융 등 지원 사업 연계 알선 및 사업 성과 분석

□ 해외진출에 대응한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지원

- 지역내 기업의 해외시장 선점 및 특허분쟁 예방을 위한 해외IP 확보 지원
 - 진출 국가에서의 지식재산권 취득은 기업의 자체 기술력이나 브랜드에 대해 해외 진출이 용이하고 모방 피해 대책과 타사의 브랜드 선점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해외 출원비용 등의 지식재산 활동비는 고액이므로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지역지식재산센터-특허관리회사-해외지식재산센터 협업으로 우수특허 선별·해외 출원 지원체계 구축지원
 - * 특허바우처 등 해외출원 지원사업과 연계
 - (지원내용) 기술수출입 등을 위한 컨설팅, 시장조사
 - 특허·상표·디자인 통합형 분쟁 컨설팅, 공동대응이 필요한 기술분야에 대한 산업 분야 협의체의 선제적 대응 지원

2. IP-창업도시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

- 대학·연구소의 기술사업화 인프라 및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화 및 기술창업을 촉진

- (기술수요기반 신사업 창출지원) 대학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R&D 프로그램을 개발,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학을 산학공동연구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산학공동연구로 산출된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수립하고 성과에 대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연연계 사업화 선도모델) 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융합기술 발굴 등을 통해 융합생태계 조성 지원
- 각 기관의 R&D 성과를 한데 모아 공동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BM을 발굴·선정하여 사업화 R&D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 코워킹플레이스 설립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 (코워킹스페이스* 설립지원) 창업지원 혹은 창조 활동 관련 소규모 코워킹스페이스 및 지원 조직 설립에 대한 자금 지원
 - * 코워킹 스페이스란 서로 다른 소속의 전문가 혹은 프리랜서들이 하나의 업무 공간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나누는 협업 공간을 의미함.
 - 지역 우수 (예비) 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한 코워킹스페이스 설립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등에 대한 지원
 - 지역별 코워킹스페이스와 지역지식재산센터 및 IP 코디네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전문가 풀 및 우수 교육/네트워킹/멘토링 프로그램을 기초 지자체의 워킹스페이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 구축
- (지식재산과 기술에 대한 웹바이너 운영) 창업 기업들이 TED*와 유사하게 자신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과 기술들을 소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비전들을 설명할 수 있는 나눔의 장을 마련
 - * TED(<http://www.ted.com>, Technology, Entertainment and Design)는 1984년부터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나누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현재 5,000개 이상의 강연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1,500만명이 1억회 이상 조회할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 강연회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10~15분 정도 보유한 지식재산과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웹바이너* 방식으로 확산시킴
 - * 웹바이너(webinar)는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웹사이트의 스트리밍 서

- 비스를 이용해 양방향 소통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프리젠테이션
- 자유로운 형태의 강연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개방과 혁신과 공유와 소통을 이루어 내며 보다 발전된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협력 수단이 될 수 있음
 - 창업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기술을 공개함으로써 엔젤 투자자의 유치나 관련 기업들 간의 지식재산 거래와 이전, 관련 지재권 확보 및 M&A의 채널로 활용

□ 기술사업화 지원

- 지역내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에 대해 디자인에서 제품생산, 마케팅까지 기술사업화의 전주기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지속 도출
 - (기술은행 구축·운영) 공공·대기업 보유 기술정보 DB 구축 및 기술사업화 정보 제공, 기술이전설명회를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중소·중견기업과 접점에 있는 테크노파크와 민간기술거래기관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 (신성장동력기술사업화) 기업이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사업화 서비스 (BM기획, 기술성평가 등)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제공
 - (기술금융지원) 기술평가비를 지원하여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자금조달을 촉진하고, 품질관리·교육·포럼 등을 통한 기술평가기관 역량강화 및 신뢰도 확보
- (예시: 일본) 지식재산과 비즈니스 양 측면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가속 프로그램 운영
 - 지식재산 전략 구축이 필요하지만 방법을 몰라 구체적인 실행을 하지 못하는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이나 사업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지식재산 멘토링 팀을 파견하여 적절한 지식재산 전략에 따른 사업의 가속화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함
 - 기술 및 출구 전략 등의 진단, 지식재산 조사를 포함한 지식재산 전략 구축 지원, 즉시 권리화해야 하는 지식재산의 출원 전략 수립, 후속 조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적절한 지식재산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3. IP-문화관광도시

□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 브랜드 구축사업

- 전통산업 종사기업별 원형기술 및 개선기술에 대한 권리화 지원 세부계획 컨설팅 지원
- 전통문화를 활용한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개발지원
- 전통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위해 제품 브랜드 및 디자인 지원을 추진
 - IP 권리화를 확보한 뒤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의 판촉활동을 추진

□ 지리적표시(GI) 산업에 대한 서비스 역량 강화지원

- GI 등록생산자단체 및 구성원의 연수나 생산행정관리 업무를 주지하여 GI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GI 마크 부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
- 해외에서 국내 GI 관련 상표 출원 모니터링, 상표 등록 상황 및 현지 시장 조사 지원
- (지리적 표시 생산품 정보 제공 웹사이트 제작) GI 제도의 보급·활용 촉진 및 GI 생산품의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고, 외국과 GI 상호(相互) 보호의 실현 및 해외 판매 촉진을 위해 해외 정부 관계자, 해외 유통 관계자와 소비자 등에게 국내 GI 생산품의 정보를 한국어, 일본어, 영어 등 여러 언어로 제공하는 웹사이트 제작지원

□ 지식재산을 테마로 한 지역 축제 및 관광지 개발지원

- 다양한 전시·체험행사 뿐만 아니라 지역별 다채로운 특화행사 지원
 - (프로그램 예시) 채용행사: 지역의 우수 IP 및 R&D기업과 특허법률사무소 등이 참여하는 채용행사,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창의캠프, 초·중·고 발명 영재들의 발명아이디어를 발표대회, 창업아이디어 제품전시 등
- 한류콘텐츠를 주제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상품 개발지원
 - 국내 K-POP 콘서트, 뮤직어워드, 팬미팅, 드라마 촬영장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국내 대중문화 우수 공연콘텐츠를 발굴하여 공연관람 관광 수요 확대

- (예시: 한류드라마 투어)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서울의 10대 한류 명소 스탬프 투어는 인기드라마, 예능프로그램 촬영지 등 국내외 관광객들이 직접 선정한 '서울의 10대 한류명소'에 방문하여 기념스탬프를 획득하는 관광상품

□ 발명거리 조성 및 테마파크 조성

- 발명·특허기술에 대한 일반시민의 체감도 향상을 위한 지식체험공간으로써 발명거리 조성
- 발명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체험공간 마련과 발명특허 통합 플랫폼 거점공간을 조성
 - (공간①) 발명특허 문화확산을 위한 체험창작실, 기념관, 전시관
 - (공간②) 사업화를 위한 창업지원 공간, 업무지원을 위한 시설/사무실 등
 - (공간③) 지식재산 정보 공유를 위한 도서관, 아카이브실, 발명교육/연수관
 - (공간④) 기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라운지, 쉼, 홍보관 등)

제 3절 가치효용 극대화 방안

| 사업단계 | | 내용 | IP 첨단산업 | IP 창업도시 | IP 문화·관광도시 |
|------|-----|---------------------|--|---------|------------|
| 본 사업 | 확장기 | IV. 지식재산 네트워킹 도시 구축 | ①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류 협력지원 ② 다양한 혁신주체들과 사업 연계 및 협력추진 | | |

I. 다양한 혁신주체들과의 사업연계 및 협력 추진

- 중앙정부와 각 부처 및 기관에서는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각 부처 및 기관에서 도시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통합적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기 보다는 각 부처 정책사업의 개별적 성과를 이루는 것에 맞춰서 추진되고 있음.
 - 이에 반해 도시는 종합적인 도시발전 및 효과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부처 및 기관의 정책 사업을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바라봄
 - 하나의 도시에 유사한 도시사업을 지원을 함으로 인해 예산의 중복성 논란과 부처 및 기관 특성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사업성과가 나타남
 - 각 부처 및 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원사업의 통합적인 추진 및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하여 지식재산도시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협력방안 마련이 요구
- 타부처 사업과의 복합추진에 있어서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협력방안 도입 필요
 -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경우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실시하여 통합적으로 지원
 - 사업모집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성, 지원 대상 및 조건, 선정과정 및 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협의·구성하고 지원

- 각 부처의 사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표 27〉 부처연계 및 복합화 가능 주요 사업의 내용(예시)

| 부처 | 사업명 | 주요내용 | 연계사업(예시) |
|---------------|--------------------------|---|----------|
| 중소벤처 기업부 | 지역기업 개방형 혁신 바우처 (R&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중소기업에 바우처를 발급하고, 지역기업은 희망하는 혁신기관의 R&D 서비스를 선택·활용하여 제품개발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신제품 개발 촉진 | |
| | 원스톱기업애로 종합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상담 :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등 현장클리닉(현장지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현장클리닉 :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가 해결(통상 3일, 최대 7일) | |
|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자금과 수출기업의 글로벌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
| 문화관광 체육부 | 문화도시지정사업 | | |
| |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전통시장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산품 등과 연계하거나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장보기와 함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 | 지역브랜드화 |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우수 연구성과 창출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현장 자문 | |
| | 지역 SW산업진흥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SW기업 성장, 마케팅, 제품 국산화, 해외진출 및 산업기반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SW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

II.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류 협력지원

□ 도시간 네트워킹을 통해 도시권의 경쟁력을 향상

○ (네트워크 도시) 일정 권역 내 도시 및 지역들 간 수평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연계성에 바탕을 두고 사회공간적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체계 또는 지역발전에 관한 이론 (Battern,1995)

- 도시네트워크 모델은 유럽국가들 마다 적용범위나 목적은 다르지만 정보화, 지식 사회에가 등장되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지역개발 모델중 하나
-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대도시 지역의 경제, 사회적 집중화로 인한 지역 및 도시 간 불균형 문제해결 방안, 공간정책 변화와 공간구조 개편 및 실천수단으로서 역할을 담당

〈그림 15〉 독일 도시 네트워크 구축사례

□ 독일의 도시네트워크 모델은 지리적 공간구조, 경제구조, 기반시설 등을 토대로 4개의 구성요소인 “nodal points, connecting lines, scales”가 서로 연계되어 개발 축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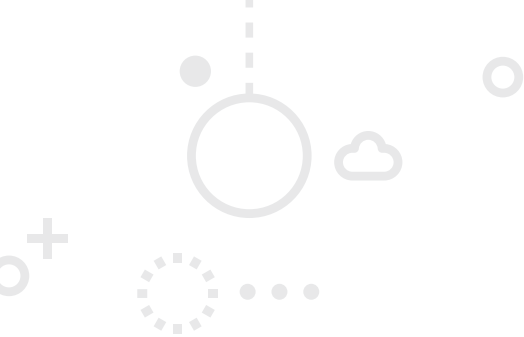
〈독일 도시 네트워크 구축현황〉

- 농촌지역: Prignitz, Staedte-Quartett, SENH
- 농촌과 산림 및 관광지역: Staedteforum Suedwest
- 중소도시 지역: Lahn-Sieg-dill, HOLM, Saechsisch-Bayerisches Staedteneetz
- 대도시와 중소도시지역: K.E.R.M, MAL, Staedtenetz EXPO-Region

□ 네트워크 구축계획

- 중심 대도시의 특성화와 지역고유의 잠재력에 기초한 효율적인 공간체계(대도시 근접, 중소도시 근접, 원격지 등) 구축과 협력적 개발유도
- 지역내 지자체간 협력체계 기반의 공간적,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제사
 - 지자체간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투자 억제

- 지식재산도시로 지정되는 각 권역별(2-4개)를 지식재산도시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네트워크 도시로 구성 및 운영
- 도시 스프롤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
 - 경제활동에 있어서 네트워크도시의 성격이 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행위자인 도시 정부들 간 네트워킹이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나 산업입지 정책 등이 지역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과 연계되지 못하므로 정책행위자 간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
 - 도시 지역간 공간적인 연계는 높으나 기능간의 연계(예, 산학연 연계)는 상대적으로 낮으면 경쟁력이 없으므로 이를 고려한 도시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타당성분석 및 운영방안 연구